

#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에 관한 연구

- 제 출 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연구 보고서를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2.

(사)한국야구발전연구원장 김 종

## - 연구진 -

### 연구책임자 :

사단법인 한국야구발전연구원 원장 김 종

### 공동연구원 :

前 스포츠서울 USA 편집국장 문상열

스포츠투아이 전무이사 박기철

중앙대학교 손 환

IPSN 전략사업국장 송재우

한양대학교 교수 이홍석

(주)보경S&C 대표이사 장윤희

SEI연구소 소장 정희윤

### 보조연구원 :

SEI연구소 송한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황수정

# - 목 차 -

<보고서 요약> .....	1
I. 서론 .....	1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0
2. 연구방법 및 절차 .....	12
가. 연구방법 .....	12
나. 연구절차 .....	13
II. 해외사례 .....	14
1. 미국 .....	14
가.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노조 역사 .....	14
나.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노조 탄생 배경 .....	18
다. 미국 프로구단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 .....	24
2. 일본 .....	28
가. 일본프로야구선수회 .....	28
나. J리그선수협회 .....	36
3. 유럽 및 기타 .....	37
가. 유럽 주요 축구선수협회 .....	41
나. 기타 주요 축구선수협회 .....	42
III.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 역사 .....	44
1. 한국 프로야구의 출범 .....	46
2.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 탄생 배경 .....	46
가. 프로야구 선수 단체 행동의 시작 .....	46
나. 프로야구 선수조직 탄생의 배경 .....	48

IV.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 현황 .....	55
1.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의 위치 .....	55
2.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노조 설립 여건 .....	57
가. 한국 프로야구단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 .....	58
V.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한 법적 접근 .....	64
1. 해외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의 법적 위치 .....	64
가. 미국 .....	64
나. 일본 .....	67
다. 유럽 .....	69
2.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에 대한 경제법적 검토 .....	70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71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77
3. 프로스포츠선수의 사업자 및 근로자성 여부 .....	81
가. 프로스포츠선수의 사업자성 .....	82
나.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 .....	83
VI. 결론 .....	86
1. 국내 현실에 맞는 대안 제시 .....	87
가. 선수중재기구 설치 .....	87
나.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 .....	88
다. 선수에이전트 기능 활성화 .....	89
VII. 참고문헌 .....	94

## - 표 목 차 -

<표 1> 미국 주요 프로스포츠 선수노조협회 현황 .....	14
<표 2> 메이저리그 연도별 연봉 .....	15
<표 3> 메이저리그 주요 선수 조직의 탄생 .....	17
<표 4> MLB 구단별 팬 소비 현황 .....	26
<표 5> 일본프로야구선수회 연혁 .....	33
<표 6> 프로야구선수회 개혁 상황 및 과제 .....	35
<표 7> J리그선수협회 연혁 .....	37
<표 8> 유럽프로축구 대표 리그 .....	38
<표 9> 국제축구선수협회 회원 현황 .....	38
<표 10> 국제축구선수협회 회원국가(Member) 웹사이트주소 .....	39
<표 11> 한국 프로야구단 변천사 .....	44
<표 12> MLB 구단가치 및 인수 현황 .....	61
<표 13> 한·미·일 프로야구선수협회 비교 .....	63
<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	71
<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73
<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74
<표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약관조항 I .....	79
<표 18> 신의성실의 원칙 .....	80
<표 19> 사적 자치의 원칙 .....	80
<표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약관조항 II .....	81
<표 21> 연봉별 세 부담 비교 .....	83
<표 22> 대한축구협회 인증 선수 에이전트 등록자 활동 현황 .....	91

## - 그림 목 차 -

<그림 1> 일본프로야구선수회의 목표 .....	34
<그림 2> 한국 프로야구 계약 협상 시 구단의 성실도에 대한 의견 .....	75
<그림 3> 한국 프로야구 계약 협상 시 구단과의 만남 횟수 .....	76
<그림 4> 한국 프로야구 계약 협상 시 선수들의 만족도 .....	76
<그림 5> 한국 프로야구 계약 협상 시 선수의 불만족 원인 .....	77
<그림 6> 선수중재기구 조직 구성 .....	88

## - 보고서 요약 -

본 연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노조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국내 선수 조직의 역사, 선수노조와 관련된 법령 및 해외 선수 노조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프로스포츠 여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가. 해외사례

#### 1) 미국

미국은 일찍이 산업화된 나라이다. 프로 스포츠 역시 일찍 태동됐고 여기에 맞춰 선수노조도 1950년대 후반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선수들이 법정투쟁을 벌이며 팀 프로스포츠 대부분 선수노조 결성을 쟁취하였다.

이 가운데 선수노조를 가장 먼저 결성한 종목은 메이저리그(MLB)다. MLBPA(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의 기원은 18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선수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1952년이며 지금의 모습으로 체계를 잡게 된 것은 1966년부터이다. NBA는 1954년 보스턴 셀틱스의 명 가드 밥 쿠지가 주동이 돼 유니온을 결성하여 1964년 선수노조(National Basketball Players Association)를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NFL도 선수노조는 1956년에 출범했지만 구단주와의 단체협약서는 1968년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축구도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어스 유니온(Major League Soccer Players Union)’이 있다. 메이저리그 축구선수 연합은 2003년 4월 선수들의 이익을 증진을 위해 형성되었다.

#### 2) 일본

일본의 프로스포츠 선수노조 조직은 대표적으로 일본프로야구선수회와, J리그선수협회가 있다. 일본프로야구선수회는 선수의 수명이 짧고 사회보장도

불충분하다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프로야구선수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0년에 사단법인으로 법인자격을 취득한 후 1985년에는 도쿄노동지방위원회에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아 노동조합이 되었다.

J리그선수협회(J. League Pro-Footballers Association; JPFA)는 일본프로축구리그(J리그)클럽에 소속하고 있는 프로축구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1996년 4월에 일본축구선수협회로 창립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명칭을 “J리그선수협회”로 변경하였다.

### 3) 유럽 및 기타

유럽을 비롯한 그 외 국가의 프로축구 역시 선수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축구 선수에 대한 세계적인 대표 단체인 FIFPro(국제축구선수협회)에 따르면 현재 41개의 회원국가가 있다.

국제축구선수협회 회원국가(Member)			
미국	벨기에	우루과이	헝가리
에콰도르	프랑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콜롬비아	포르투갈	스웨덴	불가리아
페루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브라질	이탈리아	핀란드	이집트
볼리비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카메룬
아르헨티나	스위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이스라엘
영국	키프로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덴마크	폴란드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		

대부분의 해외 선수조직은 선수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이익 증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조직은 회원(선수)에게 계약 관련 법적 조언 등을 비롯한 의료지원, 교육 등을 제공해줌으로써 선수들을 보호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는 유소년 스포츠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더불어 각종 사회 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다.

## 나.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 현황

한국은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 팀의 선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및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야구의 선전으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로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도약단계를 맞이하였다.

국내 주요 프로스포츠의 관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000만 명 관중시대를 열었고, 2009년에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프로배구 등 5개 프로종목 총 관람인원 1,082만 명으로 이어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프로스포츠를 생산하는 각 주체들의 관계, 특히 선수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와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한 법적 접근에 관한 논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희동, 2009).

프로야구계가 선수노조 설립 문제로 이슈화하고 있는 반면 프로축구를 비롯한 타 종목은 노조 설립운동은 물론 선수협의회조차 없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의 경우 ‘선수회’, 혹은 ‘선수협’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등장한 것은 프로야구 출범 7년 후인 1988년이었다. 그 후 2000년 초대 송진우 회장의 취임과 함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총회를 가졌다.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각 구단을 대상으로 프로야구 선수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야구규약, 야구선수계약서 내의 불합리한 조항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구단으로부터 부당한 징계 및 처우에 대하여 선수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설립이기도 하다.

## 다.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한 법적 접근

### 1)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에 대한 경제법적 검토

현재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입장을 프로야구를 대표하여 설명하자면 KBO가 신인 지명과 이적, 해외진출 등 선수들의 신분 변동과 관련해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구단과 선수 및 야구에 참가하는 모든 자들을 규율하는 야구규약

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야구위원회에만 있고 선수는 이를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러한 규약 등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에 대한 경제법적인 접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야구규약에 따른 자유계약선수제도 및 드래프트제도, 보류선수제도, 트레이드제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 관계는 대부분이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규약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KBO와 K-LEAGUE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적 권리·의무관계 등을 선수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약관으로서 자격을 가진다. 이는 약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수계약서의 조항들도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해석의 원칙 중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민법은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의 구체적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를 금할 이유가 없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효과를 부인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구규약의 특약조항 및 소속선수 등을 비롯한 여러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이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낮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해외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의 법적 위치

미국은 프로스포츠선수가 연방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는 1969년 프로스포츠에 대한 관할권을 받아들인다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미국의 프로스포츠선수들은 연방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구단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에이전트 제도가 체계적이어서 협상과 계약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선수들은 누구나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4년 7월 프로야구선수의 친목단체인 선수회가 선수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일본프로야구선수회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1985년 9월 동경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심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5일 자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역시 에이전트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덕분에 선수는 언제라도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연합(European Union) 프로축구선수의 법적 지위는 각국이 명시하는 인간으로서의 평등권과 노동(프로축구활동)의 자유권을 자국과 유럽경제공동체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과 유럽축구연맹의 규정이 위법임을 명시해, 프로축구선수도 정당한 노동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판례가 있다(남중웅, 강성태, 200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프로야구선수를 비롯한 프로스포츠선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례는 없다.

### 3) 프로스포츠선수의 사업자 및 근로자성 여부

‘프로야구 선수가 사업자이나, 노동자이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것은 프로스포츠선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 데 전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김희동, 2009).

프로스포츠 선수는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선수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선수들은 연봉에 대해 이제까지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신분이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로스포츠 선수는 자영업자

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에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기본적으로는 고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성격과 위임계약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무명계약으로 보는 견해, 전속 계약적 성질과 고용 유사적 성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법적 성질 여하에 불구하고 프로스포츠선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법상 근로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근로자로 이해하여야만 노동법의 적용이 가능하고, 프로스포츠선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계약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을 근거로 삼아 설명하기도 한다.

대법원의 판례(2007.9.7.)에 따르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 부분은 근로자성 판단의 부수적 부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부정만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로스포츠선수가 전통적인 근로자라고 하기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개별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연대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사이에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수들이 부담해 온 세금은 이중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그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소세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두 7가지이다. 결론적으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선수라면 주민세를 포함하여 대략 430만 원 가량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 라. 국내 현실에 맞는 대안 제시

미국과 한국은 시장의 규모, 모기업의 지배구조, 운영방식 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수노조 결성은 당분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선수들이 현 체제를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을 수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

사실 선수협의회에서 선수노조 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다. 무조건적인 선수협회의 노조화 보다는 국내 현실에 맞는 대안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선수중재기구 설치

구단과 선수의 대립적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조직의 입장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구속력 강한 조직이 필요하다. 프로스포츠의 연맹(조직) 내에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구단, 선수, 연맹간의 대립과 충돌을 완화 할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재기구를 설치할 경우 구성원 선정 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임시방편으로 쓰일 수 있으나, 구단과 선수, 연맹간의 큰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기존의 중재위원회(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2006년 7월 27일 창설 후 빈곤한 실적과 대한체육회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0년 해체)와 같이 임시방편의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수가 언제든지 중재기구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접수 절차 및 중재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재기구의 구성원으로는 정부대표 및 선수대표, 구단 사장대표, 프로연맹대표, 프로스포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구단과 선수, 연맹의 대립되는 사

안을 공정성, 효율성, 구속력, 실행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



<선수중재기구 조직 구성>

## 2)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

국내 현실에 맞는 또 하나의 대안 중 하나는 정부 관련 부처 내에 프로선수 계약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 프로야구 규약에는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당한 내용들이 많다. 이는 특히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관련에 있어 선수들의 지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선수 계약과 관련된 규약(규정)과 선수계약서 등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심사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한다면, 프로스포츠선수의 구단 입단 계약을 비롯한 연봉 등의 각종 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정부 내의 프로스포츠 상사중재기관에는 변호사를 포함시켜 조직을 구성하고 프로선수 계약관련 판결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 3) 선수에이전트 기능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배구를 제외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프로농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은 에이전트 대리계약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직도 축구를 제외한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규약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에이전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프로야구 규약과 같이 단순히 변호사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에 치중할 뿐 스포츠에 전문적 지식이 없이는 선수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이제 모든 프로선수들에게 기본적인 계약협상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에이전트제도의 활성화는 협상과 계약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에이전트 계약을 통해 구단과 선수는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계약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이전트 제도는 연봉 재계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에이전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상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리 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도 일정한 지식이 있으며, 법적인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규약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한 계약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구단과 연맹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국가 법령에 의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스포츠에이전트 법제도화 작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에 관한 연구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 팀의 선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및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야구의 선전으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로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도약단계를 맞이하였다.

국내 주요 프로스포츠의 관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000만 명 관중시대를 열고, 2009년에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프로배구 등 5개 프로종목 총 관람인원 1,082만 명으로 이어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경기장을 직접 찾지 않은 더 많은 팬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 프로스포츠는 이제 재미와 감동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여가문화의 큰 영역을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초창기에 비해 상당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프로스포츠를 생산하는 각 주체들의 관계, 특히 선수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와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한 법적 접근에 관한 논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희동, 2009).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이슈와 논의가 되어 온 부분은 프로스포츠선수가 과연 근로자인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프로스포츠선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구단)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데 전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학설은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이를 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기본적으로는 고용계약<sup>1)</sup>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도

1)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민법 655~663조).

급계약<sup>2)</sup>의 성격과 위임계약<sup>3)</sup>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무명(無名)계약<sup>4)</sup>으로 보는 견해, 전속 계약적 성질과 고용 유사적 성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김진원, 2004).

현재 선수와 구단, 협회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선수의 근로자 해당 여부, 초상권, 독점규제법 등에 대한 법률적 결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며, 몇 해 전 몇몇 선수 개인이 구단과 협회 등에 소송을 하여 패한바 있다.

국내의 법원 판례 사례로는 대법원이 프로야구선수를 비롯한 프로스포츠선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례는 없다. 다만 하급심에서는 프로축구선수에 대하여, 일반근로계약과는 달리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월 보수가 일반 사회통념상 같은 학력정도의 관리직 또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직원의 일반 급여수준에 비추어 고액이며, 소득세법도 사업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축구선수로서 경기출전에 대비하는 훈련과 경기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 짙게 깔린 비전형 무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례가 있을 뿐이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4. 3. 선고 84가합1302 판결).

또한 노동부는 프로스포츠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선수의 입단계약 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 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에 따라 노동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

2)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3) 어떤 일을 맡은 사람과 맡긴 사람 사이의 계약.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맡긴 사람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며, 맡긴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는 계약.  
4)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

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 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 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 간의 근로관계로 상하 간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과는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프로야구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1983. 11. 1. 정수 1458.1-27274), 따라서 프로야구선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1983. 11. 2. 정수 1458.1-27309).

또한, 예전부터 계속해서 선수와 구단, 협회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법적 소송이 이루어져 왔다. 선수들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해왔으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프로선수를 근로자로서 보는 법원의 판례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노조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국내 선수 조직의 역사, 선수노조와 관련된 법령 및 해외 선수 노조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프로스포츠 여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 가.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자료 및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종합하여 프로스포츠의 노조 현황에 관련한 전문연구자료 등을 분석 활용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행한 보고서, 자료집, 논문, 발표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프로스포츠 노조의 관계 법령·제도 등을 연구할 것이다.

## 2)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협의회 현황 조사

현재 국내 노동법 및 근로기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노조의 운영현황 및 연혁 등을 조사하고, 해당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쟁점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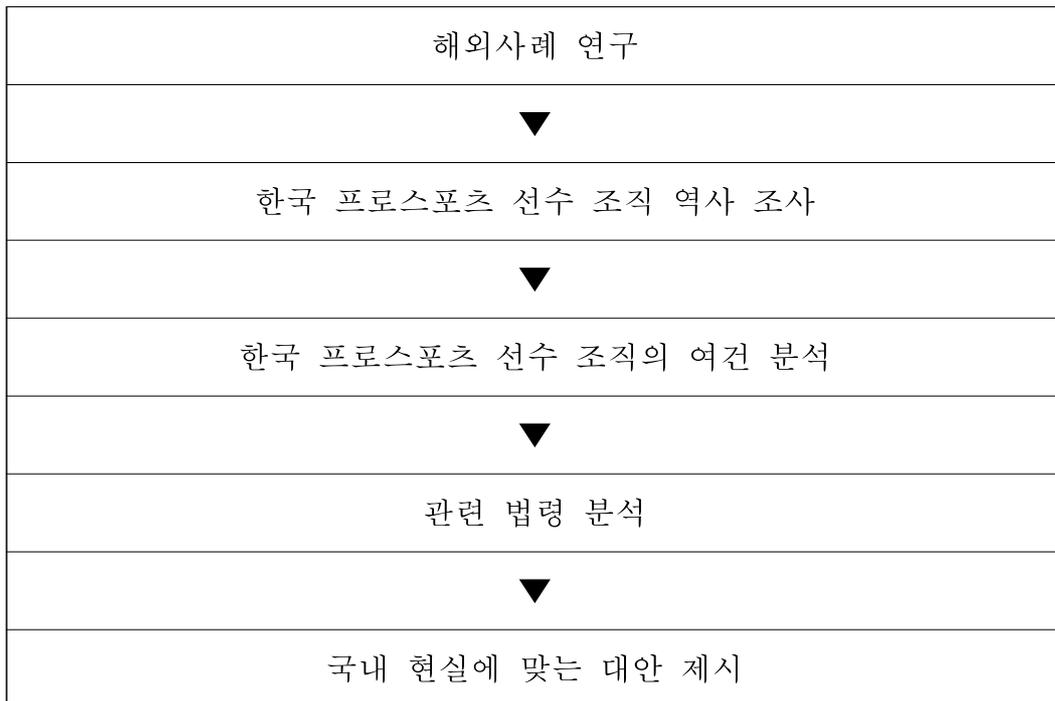
## 3) 해외 사례 조사

미국 및 일본 프로스포츠 선수조직 및 조직 활동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해외 선수조직의 역사 및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 4) 전문가 회의 및 인터뷰

프로스포츠선수 노조와 관련하여, 노동연구원 관계자, 변호사, 노동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인터뷰 등을 통해 현안 및 가능성 등을 파악할 것이다.

### 나. 연구절차



## II. 해외사례

### 1. 미국

미국의 팀 프로스포츠는 대부분 선수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선수들이 법정 투쟁을 벌이며 쟁취해서 얻은 결과이다. 자본가들은 속성상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노조결성에 절대적으로 반대함과 동시에 노동자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수노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노조는 노동운동을 통해 쟁취한 산물로 볼 수 있다.

<표 1> 미국 주요 프로스포츠 선수노조협회 현황

리그명	노조협회명	해당 사이트
MLB	MLBPA	<a href="http://mlbplayers.mlb.com/">http://mlbplayers.mlb.com/</a>
NBA	NBAPA	<a href="http://www.nbpa.com/">http://www.nbpa.com/</a>
NFL	NFLPA	<a href="http://www.nflplayers.com/">http://www.nflplayers.com/</a>
NHL	NHLPA	<a href="http://www.nhlpa.com/">http://www.nhlpa.com/</a>

#### 가.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노조 역사

미국은 1880년대에 ‘하루 8시간의 노동운동’을 펼쳤을 정도로 일찍이 산업화된 나라이다. 프로 스포츠 역시 일찍 태동되었고 이에 맞춰 선수노조도 1950년대 후반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메이저 종목은 미식축구인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이고, 그 다음으로 야구 MLB(Major League Baseball), 농구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아이스하키 NHL(National Hockey League) 순이다.

이 가운데 선수노조를 가장 먼저 결성한 종목은 메이저리그(MLB)다. 메이

저리그는 현재의 선수노조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을 1952년에 결성했으나 초기에는 유명무실했다. 1966년 노동 경제전문가 마빈 밀러를 초빙하면서 메이저리그는 본격적인 선수노조시대를 열 수 있었다. 밀러의 공로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 오늘날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최저 연봉 40만 달러(2011년부터 41만4천 달러로 인상), 평균 연봉 3,014,572달러(2010년 기준)로 높아진 데는 밀러 노조위원장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표 2> 메이저리그 연도별 연봉

연도	연봉하한선	평균연봉
1970	\$12,000	\$29,303
1975	\$16,000	\$44,676
1980	\$30,000	\$143,756
1985	\$60,000	\$371,571
1990	\$100,000	\$578,930
1995	\$109,000	\$1,071,029
2000	\$200,000	\$1,998,034
2002	\$300,000	\$2,383,235
2005	\$316,000	\$2,632,655
2006	\$380,000	\$2,699,292
2008	\$390,000	\$2,820,000
2009	\$400,000	\$2,996,106
2010	\$400,000	\$3,014,572

출처 : Wikipedia(2010). 『Major League Baseball schedule』 . [http://en.wikipedia.org/wiki/Major\\_League\\_Baseball\\_schedule](http://en.wikipedia.org/wiki/Major_League_Baseball_schedule).

프로스포츠에서 선수노조(Players Association)라 함은 구단주와 동등한 관계에서 단체교섭<sup>5)</sup>협약서(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가 작성돼야 한

5) 노동조합 등의 단체들이 임금, 노동 시간, 보건·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 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하는 것.

다. CBA가 없다면 선수노조라고 할 수 없다.

단체교섭을 구단주들과 가장 먼저 협상한 종목이 바로 MLB다. 프로 종목 가운데 MLB처럼 선수노조가 조직적이고 강성인 데가 없다. 현재 프로 종목에서 유일하게 샬러리캡(연봉상한제, salary cap)<sup>6)</sup> 제도가 없는 곳이 MLB다. 메이저리그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샬러리캡을 실시하고 있다. 메이저리그는 선수 개인의 샬러리캡 대신 구단 연봉 총액이 리그가 해당 연도에 정한 연봉상한선을 넘을 경우 사치세<sup>7)</sup>를 납부해야 한다. 사치세라고 해서 IRS(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걷어 수입이 적은 구단에 분배하는 형식이다. 샬러리캡은 천정부지로 뛰는 슈퍼스타의 연봉을 묶는 역할도 하지만 부자구단이 자유계약선수(프리에이전트, Free Agent)<sup>8)</sup>를 마음대로 사들여 단숨에 전력을 보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메이저리그는 초창기부터 선수 노조를 결성하려고 시도했다. 1985년 선수 출신인 존 몽고메리 워드가 나서 프로야구선수조합(Brotherhood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을 만든데 이어 선수들이 직접 경영을 담당하는 선수리그(the Player's League)까지 만들었다. 오늘날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의 시초인 셈이다. 1900년에는 선수보호협회(Players protective Association)가 탄생했으며, 1912년에는 미국 프로야구선수친목회(Fraternity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of America)가 만들어졌다. 1922년에는 위스컨신의 법률가 레이먼드 조셉 캐넌이 전국야구선수노조(Nat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를 결성하였으며, 세미프로페셔널 투수이기도 했던 캐넌은 스포츠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고 미연방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1920년대 헤비급 복서로 당시 미국 스포츠의 아이콘이었던 잭 템프시가 그의 고객이었다.

---

6)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7) 사치적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8) 일정기간 자신이 속한 팀에서 활동한 뒤 다른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이적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 또는 그 제도.

<표 3> 메이저리그 주요 선수 조직의 탄생

연 도	내 용
1900년	선수보호협회(Players protective Association) 결성
1912년	프로야구선수친목회(Fraternity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of America) 결성
1922년	전국야구선수노조(Nat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를 결성
1952년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결성
1966년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노동 경제전문가 마빈 밀러를 초빙, 본격적인 선수노조시대
1985년	프로야구선수조합(Brotherhood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결성

메이저리그는 이처럼 선수노조의 역사가 깊다.

오늘날 프로 스포츠가 인기를 누리고 시장이 커지면서 선수들은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슈퍼스타들의 연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중이다. 선수들의 이런 혜택에는 선수노조가 큰 힘이 됐다. 노조가 아니었다면 선수들의 연봉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되긴 어려웠다. 미국의 야구, 농구, 풋볼,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대부분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축구도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어스 유니온(Major League Soccer Players Union)’이 있다. 그러나 MLB, NBA, NFL, NHL에 비해 조직도 열등하고 활동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축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고 시장뿐 아니라 연봉도 구단이 아니라 리그가 결정하는 구조다. 타 종목에 비해 선수권익, 복지 등이 열악하면서도 선수들이 파업할 수 없는 배경에는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활동할 무대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느끼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축구가 인기가 없어 리그가 조직됐다가 소멸됐다가를 반복했다. 미국의 선수노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움직인다. 참고로 미국 국가대표축구팀은 선수노조가 결성돼 있으며 단

체교섭협약서도 발효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축구선수 연합(Major League Soccer Players Union)은 2003년 4월 선수들의 이익을 촉진을 위해 형성되었다.

### 나. 미국 프로스포츠 선수노조 탄생 배경

NBA 선수노조의 발생 과정을 보면 구단주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고 선수들의 복지는 뒷전이었던 것이 결정적이다. 이로 인해 선수들의 권익보호가 대두되면서 노조결성을 앞당기게 됐다. NBA는 1954년 보스턴 셀틱스의 명 가드 밥 쿠지가 주동이 돼 유니온(Union)을 결성했다. 당시 리그 평균 연봉은 8천 달러였고, 선수들을 위한 의료보험, 은퇴 후 연금, 최저 연봉 등이 보장돼 있지 않았다. 구단주들은 선수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1964년 올스타게임에 선수들이 불참하겠다는 강경책을 내세우자 구단주들이 마침내 선수노조(National Basketball Players Association)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NBA는 1983년에 샬러리캡을 도입했다. NBA는 NBPA가 결성된 뒤 선수단 파업은 한 차례도 없었다. 다만, 구단주들이 세 차례 직장폐쇄(Lockout)를 한 적이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있었던 98-99시즌 직장폐쇄는 200일 동안 계속됐고, 팀당 50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엄청난 출혈을 봐야 했다. 구단주들이 직장폐쇄는 새로운 샬러리캡 도입이 목표였다.

메이저리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범과 함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빨랐고 여론의 호응도 뒤받쳐 주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1946년의 야구 길드(the American Baseball Guild)는 스프링캠프<sup>9)</sup> 일당과 최저 연봉 인상을 얻어내긴 했지만 직접 협상이 아니라 구단주들이 선수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유화책의 결과였다. 1953년 공식적으로 MLBPA가 출범했으나 구단주들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선수들은 1956년 클리블랜드의 에이스 밥 펠러를 선수단 노조 회장으로 옹립하며 권익 쟁취에 나서기 시작했다.

9) 정규 리그가 시작되기 전인 이른 봄,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가지는 합숙 훈련 또는 그런 훈련을 하는 장소.

MLBPA의 초창기 활동은 미약했다. 1959년 선수 에이전트<sup>10)</sup> 출신 프랭크 스콧이 노조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1966년 7월 미국철강노조에서 노동경제 전문가인 마빈 밀러를 영입하면서 MLBPA는 환골탈태하기 시작했다. 1966년 스프링캠프를 방문한 밀러는 이 해에 메이저리그사에 한 획을 긋는 LA 다저스의 두 슈퍼스타 샌디 쿠팍스와 돈 드라이스테일의 연봉협상 결렬에 참여하면서 노조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쿠팍스와 드라이스테일은 스프링캠프에도 불참하며 다저스 구단과의 연봉 협상에 변호사 참여를 요구하며 공동 행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로는 구단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노조위원장에 오른 밀러는 1968년 처음 구단주 측과 단체교섭을 벌여 단체협약서(CBA)를 이끌어 냈다. 최저 연봉 6천 달러를 1만 달러로 끌어 올리는 성과를 이뤄냈다. 6천 달러 최저 연봉은 20년 동안 고수된 액수였다.

밀러 노조위원장이 구단주의 협상 파트너가 되면서 MLB는 1972년 사상 처음 선수단 파업을 겪게 된다. MLB는 밀러 등장 이후 1972년을 포함해 1981년, 1985년, 1994~1995년(월드시리즈 무산)등 4차례 선수단 파업이 있었고, 구단주들의 직장폐쇄는 1990년 한차례 있었다.

1994년 6월 28일 선수 협회는 8월 12일을 파업 돌입 데드라인으로 결정했다. 정규 시즌 말미에 파업 시기를 잡음으로써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노렸다. 구단주들의 수입가운데 절반이 관중 수입이며 8월말과 9월초에 피크를 이룬다. 이와 더불어 방송 중계권 수입의 대부분은 월드시리즈<sup>11)</sup>에서 나온다. 선수 협회는 파업이 구단에 최대한의 경제적 영향을 주도록 시간을 맞췄다.

서비스 제공 거부, 즉 파업은 노조를 조직한 고용자들이 가진, 노동법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무기이며 쌍방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사용자들은 고용자들의 서비스를 바랄 수 없으며 파업 참가자들은 파업 기간 동

---

10) agent. 선수를 대신해서 연봉 협상이나 광고 계약,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법정 대리인.

11)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우승팀 간에 펼쳐는 챔피언 결정전.

안 임금을 받지 못한다. 파업을 하겠다는 위협조차도 결코 손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를 신뢰성이 없게 만든다. 노조는 그 구성원이 이런 협상의 단계를 받아 줄 거란 확신도 어렵다. 파업 위협과 실제 파업은 다르다.

사용자측은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제조업 분야라면 파업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재고를 비축할 수도 있다. 서비스는 비축될 수 없다. 열리지 못한 경기나 시즌은 영원히 돌이키지 못한다. 그러나 서비스 노동자의 조합이 파업해도 사용자가 모든 걸 잃는 건 아니다. 파업은 그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의 필요가 없게 되어 비용을 상당히 줄여 준다. 한 시즌에 수백만 달러를 받는 고용자라면 더욱 그렇다.

선수들의 파업 위협에 겁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 구단주들은 8월분 선수 연금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다. 협상 기간 중에는 협정의 기한이 지났어도 보상과 복지는 최종 파국 선언까지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 구단주들은 연금 협정의 조항 가운데 포기 조항을 들어 연금 출연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수 협회는 국가 노동관계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나중에 위원회는 노조의 주장이 옳리 있다고 판정한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쌍방은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 1994~1995년의 야구 경제 전쟁은 전격전이 아니라 참호전이었다. 쌍방이 경제적으로 버티는 인내력 싸움과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는 경쟁이었다. 선수들은 파업 시기를 구단주들이 가장 경제적 손실이 큰 시기를 골라서 구단이 추구하는 샐러리캡 제안을 포기하고 기존의 자유 계약 선수 체제를 재 시행하도록 압박했다. 선수들은 분명 구단주들이 월드시리즈 없이 시즌을 끝내버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선수협회는 구단주들의 결의를 과소평가했다. 1994년 9월 14일 커미셔너 대행 버드 셀릭(Allan Huber Selig Jr.)이 월드시리즈를 포함해 남은 시즌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 타이밍 좋은 파업 전략은 실패로 끝났다. 사용자

측은 노조가 경제 전쟁의 스케줄을 지배하게 놔두지 않은 것이다.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팬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구단주들과 선수들의 강경함에 대해 혐오감만 증가했다. 1904년 뉴욕 자이언츠의 구단주 존 브러쉬가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팀 보스턴 구단과의 포스트시즌 경기를 거부한 이래 처음으로 가을의 고전(CLASSIC)은 사라졌다. 야구의 가장 큰 자신인 대중적 인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노동법에 따르면 구단주들은 야구 산업을 재편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 없었다. 동의를 바람직하긴 하지만 사용자들 가운데 누구도 선수 협회가 선수로부터 자원과 영향력을 극적으로 바꾸는데 동의하리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는 않았다. 1974년 메이저리그의 메서스미스와 맥널리라는 투수가 구단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FA(Free Agent)신분을 요구하면서 비롯되었다. 본격적인 싸움 없이는 노조가 어렵게 쟁취한 승리를 포기할 리가 없다.

구단들은 최종 결렬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했고 결국 결렬이 되면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측이 최종 제시한 안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노조가 자발적으로 구단주들이 제시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안에 동의하지 않으리란 사실을 사용자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일방적인 시행만이 야구 산업에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전의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야구팬들은 힘의 방정식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야구장의 관중 집계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야구의 상업 스폰서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팬들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좌석은 없었다. 미국의 노동 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가 노사평화를 얻을 때 공공의 이익에 최대도 부합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가정은 비싼 협약의 결과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나치게 비싸지면 시장은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장차 그들의 관계를 재조정하든지 또는 고객을 영원히 잃으리란 경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선수들의 기록을 경신할만한 페이스와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진 1994 시즌을 즐기던 야구팬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선수, 구단주, 야구팬 모두

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1994년~1995년의 파업은 백악관, 연방 노동 위원회, 연방 법원이 개입하는 소동을 겪은 후에야 끝났다. 사치세와 연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 단체 협약서가 1997년 3월 공식 서명된 이후 야구계에서의 파업 및 직장 폐쇄 등의 노사 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NFL도 선수노조는 1956년에 출범했지만 구단주와의 단체협약서는 1968년에 이르러서야 도출할 수 있었고 50년대 후반까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게임을 치렀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치료도 제대로 받기 어려웠고 심할 경우에는 조기 은퇴를 해야 했다. 미국 최고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연봉도 게임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금과는 그 위상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요즘은 오히려 선수들의 장외 스캔들로 문제가 불거지는 게 흠이지만 단체협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 연봉에 시달렸던 선수들은 비시즌에 다른 직업을 갖기도 했다.

NFL은 현재도 가장 큰 문제가 은퇴 후 후유증을 겪는 선수들의 치료문제다. 2010시즌을 마치면 기존의 단체협약서의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로저 구텔 커미셔너와 드모리스 스미스 노조위원장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판 검투사’ 게임인 NFL은 부상위험이 높고 현역 때 입은 뇌진탕 등의 후유증이 은퇴 후에도 나타난다.

미국은 60년대 중반부터 구단주들이 공식적으로 선수노조를 인정하게 되는데 60년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60년대는 월남전과 민권운동이 활발했을 때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시대가 바로 60년대다. 따라서 자본가인 구단주들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지 못했다. 노조를 인정해야 하는 시대였다. 1968년 마빈 밀러 메이저리그 노조위원장이 처음으로 구단주와 단체교섭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도 소위 시대정신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스포츠 단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탓에 노사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게다가 구단의 수입과 지출이 비교적 투명하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으나 노조 측이 이를 입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월 스트리트 발(發) 금융위기 이후 스토브리그에서 자유계약시장이 예년에 비해 다소 얼어붙고 관중감소 현상이 나타난 게 사실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노사 파트너는 경제위기로 구단들의 적자를 내고 있다며 앓는 소리를 했다. 특히 스몰 마케팅 팀들이 적자라며 FA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듯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곧바로 슈퍼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가 맞받아쳤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스타플레이어들을 다 트레이드<sup>12)</sup>해 연봉을 대폭 줄인데다 메이저리그로부터 사치세를 분배받아 2009년 한 해에만 2천만 달러 이상의 흑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몰마켓 구단이 적자가 아니었다. 사실무근이라면 반박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의 제기가 없었다. 보라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흑자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대부분의 구단이 흑자를 내는 구조다. 보라스는 메이저리그 구단이 적자라고 엄살을 부리면서 한번이라도 회계장부를 공개한 적이 있느냐며 구단을 향해 목청을 높인다. 보라스가 선수들의 몸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놓은 원흉이지만 구단들 역시 흑자를 내는 탓에 1백만 달러짜리 선수를 5백만 달러에 주고 영입하는 것이다.

메이저리그의 단체협약서는 2011년으로 종료된다. 셀릭 커미셔너가 새로운 단체 협약서를 체결하고 물러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각 종목의 커미셔너에게 가장 큰 일이며 어려운 작업이 선수노조와의 단체교섭이다. 임기 중에 단체교섭을 체결했다면 80%의 업적을 이루는 셈이다.

미국 프로스포츠의 단체협약서는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메이저리그 CBA의 경우 총 230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다. 선수단과 구단주는 단체 협약서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받는다. 선수 권익보호가 물론 묻어난다. 가령 주차와 관련된 사안을 예로 들면 각 구단은 선수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며 밴과 픽업트럭 등 적절한 차량으로 주차 시에는 무료로 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도 Meal Money로 통하는 선수 밥값, 선수가 대학을

12) 프로 팀 사이에서 전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소속 선수를 이적시키거나 교환하는 일.

다닐 때 지급되는 장학금, 히스패닉 선수들의 ESL(English Second Language) 코스 등 사소한 것들이 망라돼 있다. 일이 터졌을 때 분쟁을 없애기 위한 세부조항들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야구규약은 소책자로 180쪽에 달하지만 선수 계약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권익을 위한 사소한 조항 등은 빠져있다. 비록 선수노조 결성은 어렵지만 선수협의회는 선수들의 권익을 위한 세부사항들은 KBO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 내야 한다.

미국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기업형태에 흑자를 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선수와 구단주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

#### **다. 미국 프로구단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

미국 구단들의 특징으로는 가족중심의 개인소유 형태로 대부분이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패밀리 비즈니스는 장단점이 있는데,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선수들도 가족처럼 친밀한 장점이 있는 반면 요즘 같은 첨단시대에 조직의 동맥경화가 나타나 구단의 사업영역을 넓히는데 한계가 드러난다.

미국 프로야구의 최고 명문구단 중 하나로 꼽히는 LA 다저스가 대표적이다. 1998년 피터 오말리 구단주는 다저스 구단을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에 매각했다. 다저스는 피터 오말리의 선친인 창단 구단주 월터 오말리 때부터 메이저리그에서는 알아주는 패밀리 구단이었다. 매각의 결정적 이유는 메이저리그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데 가족 기업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FOX-TV를 보유한 머독은 야구단 경영에 전문성이 부족했고 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명문 다저스 구단을 갖고도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결국 2004년 보스턴에서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번 프랭크 맥코트에게 매각했다. 1998년 오말리가 LA 다저스를 뉴스 코퍼레이션에 매각한 금액은 3억5천만 달러였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경우 상당수가 개인 구단주 소유 형태를 띠고 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시애틀 마린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구단의 소유자는 개인 사업가이다. 그러나 뉴욕 양키스는 방송사 YES(Yankees Entertainment & Sports) 채널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또한 양키글로벌 엔터프라이즈사가 경영을 관리하고 있다. 세밀히 관찰하면 양키스도 가족중심이다. 구단의 오너는 행크 스타인브레너와 할 스타인브레너가 맡고 있으며 그 외 가족들이 고위 임원으로 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의장(Chairperson)을 맡고 있었던 조지 스타인브레너는 80세에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2010년 7월 13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조지 스타인브레너의 부인을 제외한 4명의 자녀가 제네럴파트너(무한책임사원)로 Co-Chairperson, Vice Chairperson 직책을 갖고 있다.

뉴욕 양키스와 비견되는 NFL의 델러스 카우보이스도 프런트가 가족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구단주 제리 존스(단장까지 겸하고 있다)에 아들 2명이 프런트 임원이다. NBA를 상징하는 LA 레이커스도 마찬가지다. 현재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뗀 제리 버스 구단주의 자녀들이 프런트 고위임원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양키스, 카우보이스, 레이커스는 미국 메이저 종목의 유명한 팀들이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존 헨리 구단주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레드삭스는 야구단에서 NASCAR(자동차경주)의 Roush Fenway Racing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나스카의 인기도 폭발적이다. 보스턴은 야구뿐 아니라 다른 스포츠 마케팅에도 뛰어 들어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구단들도 마케팅의 영역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지난 해 뉴 양키 스타디움을 오픈한 뉴욕 양키스와 카우보이스 스타디움을 연 NFL의 델러스 카우보이스는 지분을 공동출자해 구장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회사를 차려 화제를 모았다. 패스트푸드 피자헛 사장을 영입해 본격적으로 구장 음식사업에 뛰어 들었다. 최고의 부자 두 구단이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뒤따른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두 구단은 매머드급 규모의 새로운 구장을 건설하면서 거대한 시장을 다른 업자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원래 메이저리그 구장의 음식은 상당부분을 ARAMARK라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뉴욕 양키스는 델러스 카우보이스와 합작한 회사 LEGEND HOSPITALITY에서 판매권을 넘겼다. 그동안 경쟁자 없이 편안하게 장사했던 ARAMARK는 LEGEND HOSPITALITY의 등장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양키스의 경우 구장 평균 입장료가 67달러(83750원) 정도다. 입장료 외에는 한 명의 팬이 구장을 입장해 기념품을 사고 식음료로 사용하는 지출을 평균 55달러(68750원)로 보고 있다. 정규시즌 81경기에 평균 5만 명의 관중 입장을 고려했을 때 식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울 정도다. 미국의 스타디움은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장의 매점을 이용하라는 일종의 강제 규정이다. 가격도 시중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나 큰 불평 없이 지출을 하는 게 미국 팬들이다. 실례로 맥주 한 병이 마켓에서 1달러정도인데 비해 구장에서는 평균 7달러50센트를 받는다. 그런데도 줄을 서서 맥주를 사 마신다.

<표 4> MLB 구단별 팬 소비 현황

지구	Team	연고지	Revenue per fan(\$)
아 메 리 칸 리 그			
동부지구	New York Yankees	뉴욕주 뉴욕	55
	Boston Red Sox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66
	Tampa Bay Rays	플로리다주 피터스버그	30
	Toronto Blue Jays	온타리오주 토론토	39
	Baltimore Orioles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43

중부지구	Minnesota Twins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29
	Detroit Tigers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34
	Chicago White Sox	일리노이주 시카고	33
	Cleveland Indians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54
서부지구	Kansas City Royals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40
	Los Angeles Angels of Anaheim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30
	Texas Rangers	텍사스주 앨링턴	20
	Seattle Mariners	워싱턴주 시애틀	46
	Oakland Athletics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38

###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Philadelphia Phillies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36
	Florida Marlins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11
	Atlanta Braves	조지아주 애틀랜타	28
	New York Mets	뉴욕주 뉴욕	32
	Washington Nationals	워싱턴 D.C.	26
중부지구	St Louis Cardinals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57
	Chicago Cubs	일리노이주 시카고	51
	Milwaukee Brewers	위스콘신주 밀워키	74
	Cincinnati Reds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47
	Houston Astros	텍사스주 휴스턴	26
	Pittsburgh Pirates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27
서부지구	Los Angeles Dodgers	캘리포니아주 LA	39
	San Francisco Giants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80
	San Diego Padres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29
	Cleveland Indians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54
	Colorado Rockies	콜로라도주 덴버	54
	Arizona Diamondbacks	애리조나주 피닉스	28

출처: 포브스(2010). 『The Business Of Baseball』 . [http://www.forbes.com/2010/04/07/most-valuable-baseball-teams-business-sportsmoney-baseball-valuations-10\\_land.html](http://www.forbes.com/2010/04/07/most-valuable-baseball-teams-business-sportsmoney-baseball-valuations-10_land.html) 및 위키피디아(2010) 재구성. [http://en.wikipedia.org/wiki/Current\\_Major\\_League\\_Baseball\\_franchises](http://en.wikipedia.org/wiki/Current_Major_League_Baseball_franchises).

메이저리그의 구단들은 오너가 직접 구단을 운영하는 체제이다. 국내 야구단에서는 구단주가 야구장에 나타나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구단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이 미국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뿐 아니라 NFL, NBA, NHL 등의 구단들 역시 하나의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2. 일본

### 가. 일본프로야구선수회

일본프로야구선수회(Japa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JPBPA)는 일본의 프로야구 12구단에 소속하고 있는 일본인선수(일부의 외국인선수 포함)가 회원인 단체이다. 일본프로야구선수회는 선수수명이 짧고 사회보장도 불충분하다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프로야구선수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0년에 사단법인으로 법인자격을 취득하였다. 그 후, 1985년에는 도쿄노동지방위원회에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아 노동조합이 되었다.

일본의 출범당시의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다. 구단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다. 선수회가 있었지만 구단이나 일본 프로야구 기구(NPB)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게다가 선수가 구단의 결정 등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도 구단의 눈 밖에 나게 되면 보복성 트레이드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선수들은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노조설립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김태우, 2010). 노조설립 이후 1992년 자유계약선수제도 도입을 관철시켰고, 최저연봉 인상, 연금액 증액 등을 이끌어 냈다. 2000년에는 대리인(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프로야구선수노조는 2004년 당시 70년 일본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이 한창이었던 9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을 실시했다. 오릭스와 긴테

쓰의 합병으로 인한 선수들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신생 구단의 리그 참가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들 동안의 파업으로 일본 구단들은 입장료와 중계권료 등으로 입은 손실액은 대략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이를 추산하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선수들도 자신들의 연봉이 1/300씩 감액되는 손해를 보았다. 선수들은 출전은 거부했으나 구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장 주변에서 사인회나 팬과의 만남을 개최했다. 수만 명의 팬들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구장을 찾았다. 그러나 파업은 눈에 보이는 손실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과연 프로야구 선수가 노동자이냐’와 ‘선수회가 어째서 노동조합이냐’라는 오랜 의의제기가 2004년 도쿄고등법원이 프로야구 선수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이고, 선수회가 ‘노동조합’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구단 오너 측에서는 선수개인은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정식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1985년 도쿄지방노동위원회(현재 도쿄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 노동조합으로 법인登記되어 있으며 프로야구 재편문제 때 일본야구기구를 상대로 구단 합병을 하지 않도록 제기한 가치분 신청에서 도쿄고등재판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일본은 현재 노동조합 일본프로야구선수회와 사단법인 일본프로야구선수회의 두 단체가 병존해 선수의 지위향상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야구교실과 각종 자선활동 등 공익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노동조합 선수회는 선수의 대우개선,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또한 사단법인 선수회는 야구 전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야구교실과 자선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 선수회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전노연),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의 내셔널센터·노조 간 공공투쟁조직에 속하지 않는 중립의 노동조합이다.

현재 노동조합 회장은 한신 타이거즈의 아라이(新井貴浩), 사단법인 이사장

은 주니치 드래곤즈의 이바타(井端弘和)가 맡고 있다.

### 1) 설립경위

1946년 11월 3일 발족했는데 당시의 명칭은 일본야구선수회였다. 일본야구 연맹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첫 요구사항은 ‘최저임금의 1,500엔 인상’과 ‘동서대항전의 수익에서 220,000엔을 선수의 후생자금으로 분배하는 것’의 2가지였다. 이 요구는 각 구단 대표자회의(현재 오너회의)에서 거의 100% 채택되었다.

일본프로야구선수회가 설립된 이유는 미리 짜고 하는 경기와 도박의 배제였다. 전쟁이 극심해지기 시작한 1940년대부터 장래의 불안으로 도박에 얽힌 미리 짜고 하는 경기를 통해 돈을 챙기려는 선수가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해져 배후에서 조종하는 야쿠자(일본의 조직폭력단)가 때로는 표면으로 나와 미리 짜고 하는 게임에 실패한 선수에 대해 모두의 앞에서 제재를 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미리 짜고 하는 경기에 가장 애를 먹은 것은 각 구단의 감독이었다. 난카이(南海)의 츠루오카(鶴岡一人) 감독 등은 미리 짜고 게임을 하는 선수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 움직임이 적은 1루수로 출전해 게임 중에 자기편 야수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등 상당한 고심을 했다. 일본프로야구선수회가 연맹·각 구단 오너에게 10년 선수제도 등 임금과 신분의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감독들도 “미리 짜고 하는 시합에 선수가 출전하는 팀과는 대전하지 않겠다.”, “미리 짜고 하는 시합을 한 선수를 제명한다.” 등의 합의를 했다. 이러한 대처에 의해 미리 짜고 하는 시합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신인선수의 신분보장(복수년 계약의 의무화)과 현장에서 선수의 대우개선을 요구해 연맹측도 표면상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벌칙과 재정기관이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리그 분립 후 일본야구기구의 설립과 커미셔너직의 설치에 의해 일정한 개선을 보게 되었다.

## 2) 주요사업(2009. 11. 1. ~ 2010. 10. 31)

장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에게 인간의 심신을 활성화하고 풍요로운 인간성을 육성하는 스포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프로야구선수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야구의 보급지도에 노력하고 있다.

야구보급이 사회공헌에 기여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간다. 그 하나가 프로와 아마교류의 일환으로서 고교야구선수와의 교류를 목표로 “심포지엄, 꿈을 향해”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에 야구계의 저변 확대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4년 동안 활동해온 ‘초등학교 방문, 야구로 즐기자!’에 대신해 공원 등에서 개최하는 ‘야구로 즐기자!’로 형태를 바꾸어 부모와 아이, 친구들이 참가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던지는 즐거움, 치는 즐거움’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프로야구선수회의 주요 사업인 야구의 지도,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야구교실 및 캐치볼<sup>13)</sup> 이벤트를 주력사업으로 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하는데 창립 이래 배양해온 전국 각지의 아마추어 야구단체와의 교류를 돈독히 해 협력체제의 활용을 축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지도내용 면에서는 기초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교과도 포함시켜 폭 넓은 수강층을 흡수하고 있다.

한편 프로야구선수의 도덕성 향상에 대해서도 선수의 자각을 촉진하는 연수회를 강화하고 취업환경의 정비, 세컨드 캐리어의 지원, 그 외에 폭 넓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배트의 원료인 아오다모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일본프로야구선수회는 (사)일본야구기구, 각지의 야구연맹 등 관계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대국적인 입장에서 야구지도단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13)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푸는 준비 운동의 일환으로, 서로 공을 던지고 받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 혹은 야구 응용놀이의 일종.

### 가) 야구지도보급 및 사업

소년야구의 지도자와 스스로 야구를 하면서 실력향상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성인이 되어 야구를 시작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야구의 실기를 지도하고 야구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개최한다. 성인 및 소년 야구교실, 캐치볼 보급사업 등을 하고 있다.

### 나) 조사연구사업

야구의 기술, 제도, 역사 등에 관한 자료 및 스포츠 전반에 관한 과학서 등을 수집, 연구하고 일반 야구관계 단체, 스포츠연구자에게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수회 야구지도사업의 교재로서 활용한다.

### 다) 직능향상사업

연수회를 통해 선수로서 필요한 직업상의 지식 및 모럴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회인으로서의 교양을 높인다.

### 라) 연락교류사업

관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야구계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선수회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 마) 심포지엄사업

프로와 아마교류의 일환으로서 2002년에 고교야구선수에 대한 일시적인 지도가 인정된 것을 계기로 2003년부터 (재)일본고등학교야구연맹과 (사)일본야구기구의 공동개최로 전국 47곳에서 ‘심포지엄, 꿈을 향해’를 개최하고 있다.

### 바) 협찬사업

12구단의 올스타 스포츠페스티벌, ‘유 볼’(캐치볼 전용)을 통해 캐치볼 보급, 팬과의 교류 등 각종 협찬 사업에 힘쓰고 있다.

### 3) 일본프로야구선수회 연혁

<표 5> 일본프로야구선수회 연혁

날 짜	내 용
1946년 11월	임의단체로서 일본야구선수회 발족
1947년 4월	선수와 경영자의 대등한 입장을 확약하고 선수의 인권보장과 자유를 강조한 헌장을 선언. 아울러 10년 선수제도를 도입
1966년	이나오(稻尾) 퍼시픽리그 선수회장이 중심이 되어 조합규약 작성. 조합을 야구협약 안에서 규정하도록 양 연맹회장에게 신청했는데 결국 커미셔너에 의해 거부
1979년 1월	‘사단법인 일본프로야구선수회’ 설립 발기인 총회
2월	선수회 퇴단금 공제제도가 발족
1980년 8월	사단법인 일본프로야구선수회 설립인가. 사무국 설립
1982년 7월	임시총회. 사무국에 의해 선수회를 조합화하는 제안이 있어 토의의 결과 검토를 추진
1983년 1월	통상총회. 롯데 다카하시(高橋博)선수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조합결성에 박차를 가함
7월	임시총회. 조합결성의 방침결정. 사무국에서 규약입안을 함
1984년 1월	총회에서 조합결성 준비상황 보고 완료
3월	사무국장 등이 각 구단 캠프순회. 조합결성의 취지, 규약내용을 선수에게 설명. 조합가입 서류를 출석자 전원에게 요구
7월	임시총회에서 규약승인. 우선 범외조합으로 발족. 회장 나카하타(中畑清)
1985년 7월	조합대회에서 도쿄노동지방위원회에 조합자격 심사청구를 해 정식조합(범외조합)으로 하는 것을 결정
9월	도쿄노동위원회에 조합자격 심사청구를 제출
11월	도쿄노동위원회에서 선수회를 노동조합으로 인정
11월	노동조합으로 법인등기

#### 4) 일본프로야구선수회의 목표

일본프로야구선수회는 회원인 프로야구선수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프로야구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프로야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예를 들면, 장래 프로야구선수 후보인 소년들의 동경의 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실현을 향해 활동하고 있다.

심포지엄의 실시와 독자적인 야구계 구조 개혁의 제언, 그리고 2005년에 설치된 ‘구조개혁협의회’에서는 일본프로야구조직(NPB)과 야구계의 장래를 향한 구조 개혁을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야구계 개혁의 일익을 담당하는 입장이 되었다.

12구단의 틀을 넘은 ‘13번째의 팀’으로서 독자의 시점에서 야구계의 진흥, 스포츠 진흥을 생각하는 특별한 집단으로서 활동을 전개한다.



<그림 1> 일본프로야구선수회의 목표

“야구는 하나” “야구가 있는 국가에 태어난 행복을 팬과 서로 나눈다.” 등을 키워드로 선수의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야구계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다.

### 5) 프로야구구조개혁협의회

2004년 두 번째의 과업을 회피했을 때 선수회와 일본프로야구조직이 맺은 합의사항에 프로야구구조개혁협의회를 설치해서 시간을 두고 각 과제를 철저히 협의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주된 개혁의 상황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표 6> 프로야구선수회 개혁 상황 및 과제

- 
-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의 교류전 실현
  - 드래프트<sup>14)</sup>개혁은 고등학생과 대학, 사회인의 2회로 나누어 행하는 분리 드래프트를 실시 → 현재는 일괄 개최
  - 대학, 사회인의 자유획득권을 2회에서 1호로 → 현재는 철폐
  - 연봉 1억 엔 이상의 선수 감봉제한이 30%에서 40%로 완화.
  - 프로를 목표로 하는 선수의 받침대를 확대하기 위한 육성 틀을 신설.
  - 프리에이전트 권(FA권) 취득연수는 현행의 9년 → 드래프트 자유획득권 철폐에 따라 최단 7년으로 단축.
  - 프리에이전트(FA) 자격취득에 필요한 등록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 상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양보안을 일본프로야구조직이 제시했는데 선수회측은 투수에 대해서는 90일로 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오릭스의 나카무라(中村紀洋)의 계약갱신문제를 받아 전력외가 되는 선수의 대우 등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
- 

14) 야구·축구·농구에서의 선수 선발방식. 프로야구의 신인선수 쟁탈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1966년 제정된 미국의 프리에이전트 드래프트제를 본뜬 제도. 신인선수선발제도·신인선수지명권제도라고도 하며, 선수들의 계약금 인상경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됨.

## 나. J리그선수협회

J리그선수협회(J. League Pro-Footballers Association; JPFA)는 일본프로축구리그(J리그)클럽에 소속하고 있는 프로축구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사무국은 일본축구협회 건물에 있다. 현재 회장은 후지타(藤田俊哉)이다.

1996년 4월에 일본축구선수협회로 창립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명칭을 “J리그선수협회”로 변경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는 현재의 규약에서 J리그의 클럽에 소속하고 있는 일본국적 선수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칭변경과 함께 J리그 경험자로서 현재는 해외클럽에서 플레이하는 일본국적 선수도 가입대상이 된다. 또한 명칭변경 이전부터 외국적 선수에 대해서는 임의의 가입이 인정되고 있다. 선수의 지위향상에 관한 문제의 대처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축구클리닉과 각종 자선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 1) 설립경위

J리그선수에 의해 선수의 입장에서 활동하고 발언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가와부치(川淵三郎) 회장의 호소에 의해 가토(加藤久)가 발기인이 되어 1994년에 설립준비를 시작했다. 1996년 4월 회장에는 하시라타니(柱谷哲二) 등 16지부 468명의 회원에 의해 설립되었다. 2010년 현재 37지부, 회원은 약 1,000만 명이다.

### 2) J리그선수협회의 이념

일본축구계의 일류선수로서 풍부한 축구문화의 보급 및 진흥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프로축구선수의 사회적, 경제적인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축구문화의 보급과 진흥을 목표로 한다.
-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한다.
- 프로축구선수를 둘러싼 환경개선에 전념한다.

- 국내외의 축구관련 단체와의 교류
- 팬 서비스의 철저

### 3) 연혁

<표 7> J리그선수협회 연혁

날 짜	내 용
1994년 1월	설립준비를 시작
12월	설립준비회 제1회 대표자회의 개최
1996년 4월	일본축구선수회 설립
2000년	국제축구선수협회 연맹에 가맹
2006년 4월	유한책임 중간 법으로서 법인자격 취득
2009년 6월	일반 사단법인으로 개조
2010년 11월	J리그선수협회로 명칭 변경

### 3. 유럽 및 기타

유럽은 한 마디로 축구의 대륙이다. 유럽축구연맹(The Union des Associations Europeennes de football)은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의 유럽 대표 축구단체로 1954년 6월 15일 스위스 바젤에서 설립되었다. 유럽의 52개국이 가입되어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프로축구리그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흔히 세계 3대 축구리그라고 불리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sup>15)</sup>, 에스파냐의 프리메라리가<sup>16)</sup>, 이탈리아의 세리에A<sup>17)</sup>가 대표적이다. 세계 3대 축구리그를 만드는 원동력은 철저한 지역연고제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들의 홈팀에 대한 애정이다(홍석표, 2003). 그 외 유럽의 주요 프로축구 리그는 다음과 같다.

15) Premier League. 잉글랜드의 프로축구 1부리그.

16) Primera Liga. 에스파냐(스페인)의 프로축구 1부리그.

17) Serie A. 이탈리아의 프로축구 1부리그.

<표 8> 유럽프로축구 대표 리그

국가명	리그명	국가명	리그명
England	Premier League	Greece	Superleague
Italy	Serie A	Netherlands	Eredivisie
Spain	La Liga	Ukraine	Premier League
Germany	Bundesliga	Scotland	Premier League
France	Ligue 1	Turkey	Super Lig
Portugal	Liga Sagres	Belgium	Jupiler League
Russia	Premier League	Switzerland	Super League

출처: 『The Champion 2010~2011 유럽축구 가이드북』 . 맥스미디어

FIFPro(국제축구선수협회, <http://www.fifpro.org>)는 프로 축구 선수에 대한 세계적인 대표 단체로, 현재 41개 회원국가의 선수 조직과 후보회원국가, 참관국가 등이 있다.

<표 9> 국제축구선수협회 회원 현황

회원국가(Member)			
미국	벨기에	우루과이	헝가리
에콰도르	프랑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콜롬비아	포르투갈	스웨덴	불가리아
페루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브라질	이탈리아	핀란드	이집트
볼리비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카메룬
아르헨티나	스위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이스라엘
영국	키프로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덴마크	폴란드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후보회원국가(Candidate Member)	참관국가(Observer)
코스타리카	가나
세르비아	나미비아
모로코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중국

출처: 국제축구선수협회 공식홈페이지. <http://www.fifpro.org>.

<표 10> 국제축구선수협회 회원국가(Member) 웹사이트주소

	국가명	조직명	사이트주소
1	핀란드	Jalka PallonPelaaja Yhdistys of Finland	<a href="http://www.jpy.fi">http://www.jpy.fi</a>
2	스웨덴	SFS-Spelarforeningen Fotboll Sverice	<a href="http://www.spelarforeningen.com">http://www.spelarforeningen.com</a>
3	노르웨이	NISO	<a href="http://www.niso.no">http://www.niso.no</a>
4	프랑스	UNFP-Union Nationale des Footballers Professionnels	<a href="http://www.unfp.org">http://www.unfp.org</a>
5	벨기에	SPORTA-VSB	<a href="http://sporta.acv-online.be">http://sporta.acv-online.be</a>
6	덴마크	Spillerforeningen	<a href="Http://www.Spillerforeningen.dk">Http://www.Spillerforeningen.dk</a>
7	네덜란드	VVCS-Vereniging Van Contract Spelers	<a href="http://www.vvcs.nl">http://www.vvcs.nl</a>
8	영국	PFA-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a href="http://www.givemefootball.com">http://www.givemefootball.com</a>
9	스코틀랜드	PFA Scotland	<a href="http://www.pfaScotland.co.uk">http://www.pfaScotland.co.uk</a>
10	아일랜드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of Ireland	<a href="http://www.pfai.ie">http://www.pfai.ie</a>
11	스페인	AFE-Asociacion de Futbolistas Espanoles	<a href="http://www.afe-futbol.com">http://www.afe-futbol.com</a>
12	포르투갈	SJPF-Sindicato dos Jogadores Profissionais De Futebol	<a href="http://www.sjpf.pt">http://www.sjpf.pt</a>
13	오스트리아	VdF-Vereinigung der Fussballer	<a href="http://www.vdf.at">http://www.vdf.at</a>
14	스위스	SAFP-Swiss Association of Football Players	<a href="http://www.safp.ch">http://www.safp.ch</a>

15	이탈리아	AIC-Associazione Italiana Calcatori	<a href="http://www.assocalcatori.it">http://www.assocalcatori.it</a>
16	슬로베니아	SPINS-Sindikata Profesionalnih Igralcev Nogometa Slovenije	<a href="http://www.spins-sindikata.si">http://www.spins-sindikata.si</a>
17	헝가리	HLSZ-Hivatasos Labdarugok Szervezete	<a href="http://www.hlsz.hu">http://www.hlsz.hu</a>
18	루마니아	SFAN-Asociatia Fotbalistil Amatori si Nonamatori	<a href="http://www.afan.ro">http://www.afan.ro</a>
19	불가리아	Association of bulgarian footballers	<a href="http://www.abf-bg.org">http://www.abf-bg.org</a>
20	그리스	Panhellenic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a href="http://www.psap.gr">http://www.psap.gr</a>
21	폴란드	PZP-Poski Zwiasek Pilkarzy	<a href="http://www.pzp.info.pl">http://www.pzp.info.pl</a>
22	러시아	Union of football Players and Coaches	<a href="http://www.psft.ru">http://www.psft.ru</a>
23	일본	JPFA-J-League Pro-Footballers Association	<a href="http://www.j-leaguers.net">http://www.j-leaguers.net</a>
24	인도	FPAI-Football Players' Association of India	<a href="http://www.fpaofindia.com">http://www.fpaofindia.com</a>
25	인도네시아	API-Asosiasi Pemain Sepakbola Profesional Inonesia	-
26	오스트레 일리아	PFA-Professional Footballers Australia	<a href="http://www.pfa.net.au">http://www.pfa.net.au</a>
27	뉴질랜드	NZPFA-New Zealand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a href="http://www.nzpfa.co.nz">http://www.nzpfa.co.nz</a>
28	이집트	EPFA-Egyptian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a href="http://www.epfaegypt.org">http://www.epfaegypt.org</a>
29	카메룬	AFC-Association des Footballeurs Camerounais	-
30	남아프리카 공화국	SAFPU-South African Football Players Union	<a href="http://www.safpu.org">http://www.safpu.org</a>
31	키프로스	PASP-Pancyprian Footballers Association	<a href="http://www.pasp.org.cy">http://www.pasp.org.cy</a>
32	이스라엘	IFPA-Israel Football Players Association	-
33	미국	Major League Soccer Players Union	<a href="http://www.mlssplayers.org">http://www.mlssplayers.org</a>
34	콜롬비아	Asociacion colombiana de Futbolistas	<a href="http://www.acolfutpro.org">http://www.acolfutpro.org</a>
35	에콰도르	AFE-Asociacion De Futbolistas del Ecuador	<a href="http://www.afe.com.ec">http://www.afe.com.ec</a>
36	페루	SAFAP-Agremiacion de Futbolistas Profesionals del Peru	<a href="http://www.safap.org">http://www.safap.org</a>

37	볼리비아	FABOL-Futbolistas Agremiados de Bolivia	<a href="http://www.fabolivia.com">http://www.fabolivia.com</a>
38	브라질	Federacao Nacional dos Atletas Profissionais	-
39	우루과이	MUFP-Mutual Uruguay de Futbolistas Profesionales	<a href="http://www.mutual.com.uy">http://www.mutual.com.uy</a>
40	아르헨티나	FAA-Futbolistas Argentinos Agremiados	<a href="http://www.agremiados.com.ar">http://www.agremiados.com.ar</a>
41	칠레	Sindicato Futbolistas Profesionales de Chile	<a href="http://www.sifup.cl">http://www.sifup.cl</a>

출처: 국제축구선수협회 공식홈페이지. <http://www.fifpro.org>.

## 가. 유럽 주요 축구선수협회

### 1) 스웨덴 축구선수협회

#### (SFS-Spelarforeningen Fotboll Sverige)

스웨덴의 축구선수협회(SFS)는 1975년 탄생하여 2001년에 국제기구 FIFPro에 가입하였다. SFS는 계약에 대한 내용, 선수들의 보험, 세금, 대리인, 교육, 법률 고문 등을 선수들에게 지원해 준다. 또한 SFS는 선수계약에 있어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 2) 프랑스 축구선수협회

#### (UNFP-Union Nationale des Footballers Professionnels)

프랑스 축구선수협회(UNFP)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해 1961년 11월 16일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및 프로축구의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 3) 영국 축구선수협회

#### (PFA-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영국 축구선수협회(PFA)는 지역사회와 자선활동 지원, 선수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수의 지역 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여

PFA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한다. 또한 PF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 간행물을 발행하고 웹사이트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다.

#### 4)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

##### (AIC-Associazione Italiana Calciatori)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AIC)는 Serie A를 비롯한 각 프로리그에서 발생하는 선수들의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변호사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법적 도움을 준다. 또한 선수 관리를 위한 계약 문제, 외국인 선수의 교육, 선수 대리인 문제 등 선수와 회사 간의 분쟁에 대해 중재위원회 운영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폭력, 암 등의 캠페인 및 각종 행사에 후원하며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5) 폴란드 축구선수협회

##### (PZP-Poski Związek Piłkarzy)

폴란드 축구선수협회(PZP)는 선수들을 홍보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7년 2월 28일에 설립되었다. PZP는 프로선수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계약 관련 법적 조언 및 사후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소년 스포츠 홍보,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에 힘쓰고 있다.

### 나. 기타 주요 축구선수협회

#### 1) 러시아 축구선수협회

##### (Union of football Players and Coaches)

러시아의 축구선수협회는 부정부패가 축구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 여기고 있으며 공정한 축구를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구인 구직 알선, 보험, 교육 등을 제공한다.

## 2) 인도 축구선수협회

### (FPAI-Football Players' Association of India)

인도 축구선수협회는 축구를 개발하고 선수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활동한다. 이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선수들의 복지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코칭 캠프 조직 및 영어 수업, 법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조직을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 3) 오스트레일리아 축구선수협회

### (PFA-Professional Footballers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축구선수협회(PFA)는 1993년 노조를 설립하여 표준 보증 계약을 설립하고 국가 대표팀 경기 단체 교섭 및 협약 작성 등의 업적을 남겼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 장려 및 아시아와의 협력 증진을 통한 양해 각서(MOU) 체결 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4) 뉴질랜드 축구선수협회

### (NZPFA-New Zealand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뉴질랜드 축구선수협회(NZPFA)는 프로축구의 세계적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회원은 무료이며 뉴질랜드 축구 국가 대표팀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 5)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선수협회

### (SAFPU-South African Football Player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선수협회(SAFPU)는 비영리단체로 1997년에 조직되었다. 축구선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축구선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신홍선수 발굴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과 코칭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 Ⅲ.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 역사

1982년 3월 27일 동대문구장에서 첫 발을 내 디딘 한국프로야구는 2011년 30주년을 맞게 된다.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원년 개막전 시구 자는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전두환 대통령이였다.

<표 11> 한국 프로야구단 변천사

연도	구단 변천사							
	KIA 타이거즈	LG 트윈스	SK 와이번스	넥센 히어로즈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1982 프로원년	해태 타이거즈	MBC 청룡		삼미 슈퍼스타즈	OB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1985				청보 핀토스				
1986								빙그레 이글스
1988				태평양 돌핀스				
1990		LG 트윈스						
1991			쌍방울 레이더스					
1994								한화 이글스
1996				현대 유니콘스				
1999					두산 베어스			
2000			해체 SK 와이번스					
2001	KIA 타이거즈							
2007				해체				
2008				우리 히어로즈 히어로즈				
2010				넥센 히어로즈				

출처: 한국야구위원회(2010). 『2010 한국프로야구 연감』, p887 ~ 893 재구성(정규리그 참가년도 기재).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프로스포츠가 ‘공포정치(恐怖政治)’를 추구한 제5공화국에서 탄생했다는 모순 속에 한국프로야구는 출범 이후 부침을 거듭하다가 2009년 정규리그만 총 592만 5,285명으로 한 시즌 최대 관중 신기록을 작성했다. 2년 연속 500만 이상 관중을 처음으로 기록하며 르네상스 시대를 연 한국프로야구는 2010년 5월 30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롯데의 경기에서 통산 누적 관중 1억 명 째 주인공을 탄생시켰다. 전날부터 이틀 연속 전 구장 만원 역시 새로운 기록이다. 물론 현재의 야구 인프라에서는 한 시즌 600만 관중이 한계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프로스포츠 사상 첫 1억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가 신생구단 창단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쾌적한 관전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야구장 신축을 통해 한 시즌 1,000만 관중을 기록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도 주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한 시즌 최대 관중 신기록을 세운 2009시즌 직후 표출된 프로야구 선수들의 단체 행동이다. 2000년 조직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현 손민한 회장의 주도 하에 2009년 12월 2일 제10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선수노조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이는 선수협회가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선수협은 일정 시점에 반드시 임의 단체에서 벗어나 사단 법인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나타냈다. 프로 선수 노조 출범은 프로야구계와 야구팬들은 물론 프로 축구, 농구, 배구 등 타 종목의 조직과 선수, 정부, 국회의 관심까지 모으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프로야구 원년 이후 한국프로야구의 선수 조직 및 단체 행동사(史)에 시간적 사건 전개를 통한 접근과 특징적 분류를 하면서 향후 움직임의 향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1. 한국 프로야구의 출범

한국 프로야구는 고교 야구를 텃밭으로 삼고 실업 야구를 모태로 1982년 군부 정권인 제5공화국 실세들의 지원 속에 탄생하게 되었다. 프로스포츠의 시작은 자본주의의 성숙과 경제 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여유가 그 근본적인 바탕이 돼야 하는데 프로야구는 근본부터 달랐다.

따라서 선수들의 프로야구에 대한 의식도 모호했다. 출범 직후에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직업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적어도 평균 이상의 부(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때 받은 계약금이면 한 번에 작은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프로야구 출범 이듬해인 1983년 선수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심은 제일교포 투수 장명부와 이해창, 김재박 등이었다고 한다. 주축 선수들의 면면과 시대적 상황으로 판단할 때 이들이 추구한 것이 궁극적으로 노조였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구단들이 철저히 잘라 버려 사실상 어떤 의미를 가질 만큼 드러나지도 않았다. 당시에는 선망 받던 직업인 프로야구의 스타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협의회를 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이나 팬들에게 납득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지지를 받기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 2.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 탄생 배경

### 가. 프로야구 선수 단체 행동의 시작

1984년 4월 10일 전년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었던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사상 첫 단체 행동이 벌어졌다. 6개 구단 시절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해태는 1983년 전반기 30승을 거뒀으나 포스트시즌에 진출했고 한국시리즈에서 후반기 우승팀인 MBC 청룡을 4승1패로 제압했다. 선수들의 첫 우승

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 등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적에 따른 보너스가 없어졌다. 이에 대한 불만이 박건배 구단주 주최의 시즌 개막 격려 회식에서 단체 행동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김응룡 감독이 함께 했으나 구단주의 인사말과 건배 제의가 끝난 후에도 선수들은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불고기가 까맣게 타 들어 가기만 한 사건이었다. 이후 몇몇 구단에서 선수들 일부가 움직한 일은 있었으나 1군 선수단 대부분이 단체로 반발하는 것은 10년 후인 1994년 OB에서 벌어졌다.

OB 베어스의 간판선수 박철순이 참가한 가운데 1994년 페넌트레이스 막판인 9월 6일 당시 윤동균 감독의 퇴진을 주장하며 선수들의 단체 행동이 시작됐다. 이는 이틀 전 9월 4일 쌍방울전에서 패한 후 윤동균 감독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질타하면서 불거졌다. 박철순, 장호연, 김상진, 김형석, 김상호 등이 전주 숙소에서 회의를 한 뒤 선수단을 이탈해 대전을 거쳐 서울, 그리고 양평의 모 콘도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철순은 윤동균 감독이 퇴진하면 자신도 유니폼을 벗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구단측에서는 윤동균 감독의 퇴진은 불가능하고 선수들은 은퇴시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으나, 결국 감독 교체와 주동 선수 5명 퇴출로 합의가 됐다. 그러나 팬들의 반발이 거세져 대부분의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복귀시켰고 성적이 부진했던 강영수만 방출되고 말았다.

위의 두 사례가 한국프로야구에서 선수들이 각각 구단과 지도자에 맞서 단체 행동을 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구단은 트레이드 혹은 방출로 전체가 아닌 일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 밖에 감독에 대한 특정 선수, 혹은 코치들의 불만이 개인적으로나 몇몇의 행동으로 나타났으나 공식화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 나. 프로야구 선수조직 탄생의 배경

### 1) '선수회' 전면 등장

#### 가) 선수회 결성

현재는 '선수협'이라고 주로 쓰는데 '선수회', 혹은 '선수협'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등장한 것은 프로야구 출범 7년 후인 1988년이였다. 이때 선수회 조직을 주도한 선수가 소속팀인 롯데 구단과 여러 마찰을 빚었던 당대 최고의 투수 최동원이다. 그는 1988시즌 중반인 8월경부터 각 팀의 고참 선수들과 선수회 결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동원은 이 과정에서 친척으로 알려진 모 변호사와 함께 KBO 행정에 관여는 했지만 선수회 결성에 찬성했던 또 다른 모씨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선수회 조직의 적법 여부와 조직 및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문의하는 등 초보적인 작업을 했다.

그러나 당시는 말 그대로 '선수회'였다. 언젠가 노조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해도 그 때는 '선수협의회'라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선수상조회'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선수들의 반응은 좋았다. 이에 힘을 얻은 최동원은 모 회사의 '사우회' 회칙을 구해 자신이 주도하는 프로야구 '선수회' 회칙시안을 만들고 9월 10일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열 계획을 세웠으나 이날 연기된 경기가 편성되어 9월 13일 유성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프로야구 7개 구단<sup>18)</sup> 142명이 참석한 사상 첫 '선수회'의 창립총회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선수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였다. 이 부분에서도 초기 선수회는 상조회 성격이 짙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동원은 임기 2년의 회장, MBC의 이광은이 부회장으로 뽑혔으며, 해태의 서정환, OB의 계형철 등이 감사로 선출됐다.

선수회 총회에서 그 동안 쌓였던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25% 연봉 인상 상한선을 철폐해야 하고, 반대로 하한선은 현상 유지하거나 혹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다.

18) 해태, 삼성, 태평양, OB, 빙그레, MBC, 롯데 이상 총 7개 구단

프로야구 출범 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 실행 이사회가 99% 이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선수들이 주요 사안의 결정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방법도 없었다. 구단 실행이사회는 선수 개인의 연봉 인상 상한선을 25%로 묶고 하한선은 2군 연습생은 300만원으로 깎았다. 25% 상한선은 규약에 없는 조항이고, 규약에는 연봉 하한선이 6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구단 실행이사회는 규약 위에 군림했던 것이다.

선수회를 주도한 발기인들은 연금제도의 도입, 자유계약선수와 대리인 제도에 대한 규약 개정도 주장했다. 남은 과제는 ‘선수회 전체가 얼마나 결속하는가?’였다. 결과를 떠나 선수회의 가치는 실행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된 한국 프로야구에 드디어 선수들의 목소리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프로야구 전 구단의 선수들이 참여한 선수회의 출현에 대한 KBO와 구단의 대응은 강력했다.

KBO는 10월 6일 실행이사회를 열고 대전 동학사에서 9월 30일 가진 선수회 1차 대의원 회의에 참가한 4개 구단 선수 20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사장단 회의 결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재 결의했다. 프로야구 사장단은 신속하게 대응해 이미 9월 20일과 23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대의원에 대한 재계약 불가 정도가 아니라 선수회 회비 납부 선수도 재계약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구단 간의 징벌 원칙도 정해 선수회 관련 선수를 어떤 구단이 받아들이면 그 구단과는 경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러한 세 가지 결의 사항은 구단주들의 재가를 얻어 최종 확정된 뒤 해당 선수회 관련자들에게 공식 통보됐다.

구단 측의 신속하면서도 치밀함 보다는 감정이 앞섰던 선수들의 예상을 뛰어 넘을 수준의 강경한 대책이 발표되자 선수회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선수회 해산에 성공한 구단 실행이사회는 구단주 명의를 자제 명령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대의원들을 단호하게 밀어 붙였다. OB는 대의원들의 팀 훈련 합류 금지, 롯데는 훈련 중단 등을 지시했다.

당시 7개 구단은 선수회가 ‘상조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향후 노조로 발전할 것을 우려 해 직장 폐쇄의 배수진을 치고 대처한 것이다.

특히 구단주들까지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섰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징계 완화도 구단주들이 결정했다. 실행이사회와 사장단은 사후에도 징계를 주장했으나 구단주들이 10월 14일 플라자컨트리클럽에서 총회를 겸한 골프 회동을 갖고 향후 선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선수들은 구제해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 나) 프로야구 선수 조직 시도의 실패 배경

실패로 끝난 최동원 주도의 1988년 선수회 결성 시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다.

최동원의 목적도 이례적이었다. 그는 ‘어려운 동료, 불우한 후배들을 돕자는 취지로 자신과 같이 연봉을 많이 받고 여유 있는 선수들이 앞장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생각만 한다면 선수회를 만들 일이 없다’고 현재는 휴간 중인 <주간야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선수회에 대한 인식이 불우이웃돕기 혹은 자선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조 활동이 본격화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도 분명하다. 1988 시즌 중에 있었던 해태 투수 김대현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도 계기가 돼 선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기였다. 그러나 선수들 일각에서는 당초의 취지가 몇몇 선수들에 의해 변질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KBO는 이웅희 총재, 단장들이 참가하는 실행이사회는 롯데 박종환, 해태 노주관, OB 경창호, 삼성 윤경현, MBC 조광식, 빙그레 노진호, 태평양 강창호이 단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차 선수회 파동을 계기로 구단 실행이사회가 사장단 회의로 격상된 것도 흥미롭다.

선수회 조직의 실패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됐지만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의 부재, 그리고 내부적인 전문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선수회 조직 결성의 시도와 실패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까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초대형 트레이드가 이뤄졌다. 1988년 11월 롯데의 최동원 오명록 김성현과 삼성의 김시진, 전용권, 오대석, 허규옥이 맞바뀌었다. 그리고 한 달 후 롯데의 김용철, 이문한이 삼성의 장효조, 장태수와 2-2로 트레이드 됐다.

이를 놓고 야구계에서는 선수회 파동을 계기로 트레이드가 활성화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전력 강화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해도 징계의 의미가 강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계기로 후일 선수회 문제는 반드시 관련 선수들의 징계성 트레이드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최동원은 삼성으로의 트레이드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외유를 했으며 이듬해인 1989년 5월 결혼을 한 뒤 삼성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의 예전 구위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 다) 선수회 조직의 과도기

한국프로야구는 1990년대 중흥기를 맞으면서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일정부분 개선됐다. MBC를 인수한 LG 트윈스의 등장도 프로야구 발전에 일조했다. 따라서 선수회에 대한 필요성은 수그러들었다. 한편으로는 일부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이뤄지고 역대 연봉을 받는 스타들이 생기면서 프로야구 내부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 전체 선수 조직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1996 시즌 후 LG 투수 이상훈이 다시 선수회 조직을 시도하고 나섰으나 대의명분이 약해 대다수 동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이상훈은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막는 야구 규약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어찌 보면 자신의 이익 구현을 선수 전체의 요구로 일치시키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이상훈은 프로야구 전체의 선수 조직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신이 소속된 LG 선수단만이라도 응집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법적인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1997시즌을 마친 뒤 주니치 유니폼을 입고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하면서 호지부지됐다.

## 2)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출범 배경

### 가) 프로야구 선수조직 출범 2차시도

2000년 1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프로야구 선수협회’ 입회 서명 운동이 열렸다. 예상대로 KBO 이사회는 20일 곧 바로 8개 구단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프로야구 선수회 관련 선수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선수협회는 1월 22일 삼성과 현대 선수들을 제외한 6개 구단의 발기인 75명으로 창립총회를 열었다. 한화의 송진우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가 자정을 넘겨 새벽 1시 20분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주축은 송진우, 마해영, 양준혁, 심정수, 강병규, 김재현 등이었다.

구단의 대응은 1988년과 비슷했다. 불과 몇 시간 후인 22일 오전 8시 KBO 이사회는 선수협 관련 선수 전원 방출과 연봉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구단은 선수협의 배후설을 주장하며 선수들의 휴대 전화 차단과 선수들 격리, 코칭스태프와 가족을 동원해 선수들의 탈퇴 설득 등의 전략을 썼다.

1988년과 뚜렷하게 다른 여건은 주위의 분위기였다. 야구팬들이 선수협 사무국에 대한 실무 지원단을 구성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적 자문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TV 시사 토론을 열고 민주노동당의 지지 선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까지 KBO를 압박한 가운데 2월 27일 선수협 후원의 밤이 개최됐다. 이번에는 선수협 측의 배수의 진을 친 결속에 KBO 이사회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KBO는 3월 15일 선수들의 팀 복귀를 허가하면서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종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한 선수협은 시즌 후인 12월 18일 집행

부 주도로 모임을 열어 사실상 노조인 사단 법인화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즌 전을 1차, 시즌 후를 2차 선수협 파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KBO도 2차 파동에 강력하게 맞대응해 12월 20일 선수협의회 집행부 주도자 6명(송진우, 마해영, 양준혁, 심정수, 박충식, 최태원)을 일시에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했는데 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대 선수들 사이에서 방출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 참가를 거부할 것이라는 선언이 나왔고 LG 선수 38명, 해태 15명, SK 31명, 롯데 27명, OB 30명 등이 같은 날 대거 선수회에 가입했다. 삼성과 현대 선수들은 직접 가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전에는 구단의 강력한 조치에 선수들이 주춤했는데 이번에는 불기 시작한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당시 프로야구를 상징했던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2001년 1월 4일 선수협 가입을 선언한 가운데 전지훈련은 물론이거니와 최악의 경우 2001시즌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구단과 선수협의 대치는 파국으로 치닫했으나 당시 어색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1년 1월 20일 김한길 당시 문광부 장관실에서 이홍석 차관보, 배종신 체육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사장단 대표인 이남현 한화 사장과 선수협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이홍석 차관보가 전날인 19일 프로야구 사장단과 선수협 대표를 각각 만나 설득 작업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까지 구단은 1월 20일까지 선수협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해외 전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버티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와 KBO 사장단, 선수협 등의 3자가 회동한 자리에서 구단과 선수들은 전지훈련과 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르기로 하고, 선수협은 집행부 직선제를 구단이 인정해주면 사단 법인화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장단도 가능한 구단부터 직선제를 수용하겠다고 해 1년 여 지속된 선수협 사태는 마무리 됐다. KBO가 선수협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되 당시 집행부 6명과 사무국장이 사퇴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물러난 선수협 제1기 집행부는 회장 한화 송진우, 부회장 롯데 박정태, LG 양준혁, SK 최태원, 감사 LG 김재현, 롯데 마해영, 대변인 SK 강병규였다. 놀라웠던 일은 ‘선수협 반대 회견’을 주

도했던 해태의 이호성이 선수협 의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사실이다.

#### 나) 선수협 파동의 후유증

2차 선수협 파동이 일단락 된 직후인 2001년 1월 31일 롯데의 마해영이 삼성으로 전격 트레이드됐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트레이드 상대가 무명에 가까운 야수들인 김주찬과 이계성이어서 롯데가 마해+영을 그냥 버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삼성의 이승엽과 마해영은 1루수로 포지션이 겹쳤다. 그러나 마해영은 2002시즌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MVP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양준혁, 심정수, 강병규 등의 트레이드가 이어졌다.

이후 선수협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이호성이 3기까지 회장을 맡았으나 활동은 미미하였고, 4기 안경현부터 5기 김한수, 6기 전준호까지 회장 없이 간사 체제로 운영됐다. 7기부터 다시 회장 체제가 되어 김동수회장이, 8~9기는 이종범 회장으로 운영됐다. 그리고 10기부터 손민한 현 회장이 이끌고 있다. 10기 집행부가 활동에 들어 간 2008년 6월 권시형 사무총장의 직무대행이 선임되고 법률 지원단이 발족하면서 조직과 활동을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선수회와도 교류에 들어갔다.

정식 명칭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KPBPA)’는 조직만으로 판단할 때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는 없으나 비슷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협의체이다.

## IV.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 현황

### 1.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의 위치

프로야구 선수가 노동자이냐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2009년 12월 2일 손민한 회장이 이끄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0차 정기 총회를 열어 노조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선수협은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28일 노조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전폭적인 지원을 얻기 어려웠다. 시즌이 시작되어 선수들이 모두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서 선수 노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기 때문이다. 선수협은 후속 조치로 6월 1일 선수 노조 설립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삼성과 LG 선수단이 노조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다른 구단의 선수단들도 “하게 되면 모두 함께 하고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혀 총회는 무산됐다.

이에 선수협은 구단의 선수단 대표자 회의로 대체하려 했으나 삼성 LG 두산의 선수 대표가 불참하면서 역시 열리지 못했다. 이를 놓고 선수협 측은 구단의 압력과 제지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여론도 달라졌다. 특히 설립 추진 시기는 물론 히어로즈의 존재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노조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이 중립성을 지키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손민한 회장은 “선수협이 생겼는데도 구단과 KBO와의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KBO는 선수협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뜻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노조를 설립해야만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 찬반 투표는 삼성과 LG 선수단의 불참으로 치러졌다. 1차 투표는 KIA와 두산까지 투표에서 빠져 성립조차 되지 못했다가 2차에 참여하면서 노조설립안이 통과됐다.

손민한 회장과 선수협 측은 12월 2일 찬반 투표 과정에서 한 때 4개 구단 선수단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삼성이 야구단을 해체한다고 해서 한국 프로야구가 사라지느냐”며 타 구단이 삼성 눈치를 보는 것을 질책하고 노조가 생긴다 해도 한국 최고의 기업들인 삼성과 LG 등이 야구단을 없애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몇몇 구단들은 선수협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조심스런 의견이었다.

투표 결과는 유효 득표수 205표 중 찬성 188표, 반대 17표로 91%의 압도적 찬성으로 정식 의결됐다.

그러나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가 접수되어 심사를 통과해야 합법적인 노조가 된다. 선수협은 일단 노조 설립 신고를 보류해놓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동안 세금 문제에서 개인사업자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무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라고 해도 어떤 이유를 들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계열사를 정리하겠다고 나섰을 때 사회적으로 막을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선수협이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된다.

정부까지 나서 중재를 한 2001년 합의서에는 연간 관중 600만 명이 될 때까지 ‘선수협의 사단 법인 설립(노조화)을 유보하고 집행부는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O 측이 받은 법률적 자문에서도 프로야구 선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야구계의 분위기는 한국프로야구가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르네상스기를 맞았다며 희망과 기대가 넘치고 있다. 2010시즌 목표를 650만 관중으로 설정했고, 2010년 정규시즌만 592만 8,626명을 동원하였다. KBO와 각 구단은 새 구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선수협이 선수노조 설립을 밀어붙이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 2. 한국 프로스포츠 선수노조 설립 여건

미국의 단체 프로 스포츠는 대부분 선수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결음마 단계인 국내 프로스포츠단과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프로스포츠 단이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다. 국내는 모기업의 계열회사 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다. 프로야구단은 1982년 출범해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 야구단의 출발 자체가 기업의 홍보창구로 활용된 면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 프로야구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선수협의회에서 선수노조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구단은 물론이고 사회적 여론도 아직은 선수편이 아니다. 야구 골수팬들은 선수노조를 지지한다. 청사진이 없는 구단에 적대감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 당장 선수노조 결성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야구단을 운영하는 구단 즉 모기업의 절대적 반대다. 선수노조가 결성될 경우 야구단 해체도 불사하겠다는 기업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처럼 구단들이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해마다 모기업의 도움으로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수노조 결성은 매우 어렵다. 우선적으로 선수노조가 아닌 선수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편이 훨씬 현실성이 있다. 선수노조가 되면 파업과 직장폐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실 국내 스포츠단의 구조를 엄밀하게 따졌을 때 프로페셔널은 없다고 봐야 된다. 개인 종목도 마찬가지이지만 무늬만 프로일 뿐 전적으로 모기업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자생적이지 못하다. 게임 형태는 장기 페넌트레이스로 프로 형식을 띄우고 있으나 구조는 아마추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프로 구단이 되려면 방송중계권료, 입장권 수입, 마케팅, 라이선싱 등으로 수입(Revenue) 창출을 이루면서 흑자 예산편성을 짜야 한다. 이에 맞춰 선수들의 연봉은 현실성 있게 리그는 연봉상한선(Salary Cap)을 제시하는 지출구조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진정한 프로 스포츠 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프로스포츠에 이런 구조로 구단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최근

축구단에서 수익을 올리고 흑자를 내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 보도도 나오고 있으나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상징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기는 하지만 미국 스포츠 단은 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의 델러스 카우보이스도 공개를 하지 않는 상태다. 델러스 카우보이스의 자산 가치는 17억 달러(약 2조 400억 원)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비싼 구단이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은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 단적인 예로 야구단이나 축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입장료도 올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향후 선수노조 형태도 개선돼야 하지만 스포츠진흥법도 프로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양을 바탕으로 선진국 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미국은 구단이 자유계약시장에서 큰돈을 투자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면 입장료도 올린다. 그리고 팬들도 성적을 내기 위한 구단의 투자라고 생각해 큰 문제를 삼지 않는다.

현재 조직되어 있는 선수협의회는 선수권익을 앞세워 노조 결성이 첫 번째 목표이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힘을 합쳐 마케팅을 넓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스포츠진흥법들의 장애요소들을 점검해 하나씩 선진국 형으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파이가 커져야 노조 결성 목청도 높일 수 있다. 프로야구는 겉으로 화려하고 내부적으로는 만성적자가 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당장 문제점 등이 개선되지 않고는 선수노조 얘기도 꺼내기 힘든 처지다.

### 가. 한국 프로야구단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

국내 프로야구단은 모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배구조다. LG 트윈스는 LG그룹의 작은 조직에 불과하다. 삼성 라이온즈도 삼성 스포츠 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지만 삼성그룹 산하의 조직이다. 이들 재벌기업들의 속성상 선수단 노조결성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을 때 야구단 해체

불사도 가능하다. 잠시 그룹 이미지는 실추될 수 있으나 가능할 법하다.

사실 야구단을 일개 회사로 봤을 때 1년 매출액을 따진다면 아주 미미하다. 그룹에서는 그룹의 산하 회사로도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홍보창구나 다름없다. 그러다보니 구단 사장은 실권이 없다. 서울의 모 구단은 구단주에게 신년사업 보고에서 거창한 마케팅 사업을 보고하자 쓸데없는 일하지 말고 야구나 잘하라는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프로구단으로서의 진정한 면모라고 할 수 없다.

그룹에서도 스포츠단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스포츠 단은 우승이 목표다. 프로야구단 출범이 30년 가까이 됐지만 국내에는 진정한 명문구단이 없다. 절대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야구단을 등한시하는 탓이다. 스포츠단도 기업처럼 운영하고 해마다 우수한 성적과 현재의 마케팅을 키우려면 스포츠에 열정을 갖고 있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스포츠 단은 한직이다. 최고 인기를 누리는 야구단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국내 야구단의 문제는 구단주가 야구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점은 잘 모른다는 것이다. 구단의 공식라인과 비선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고 결정을 내린다. 미국의 구단주들은 해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야구에 박식하다. 야구단의 운영방식 자체가 미국에 비해 매우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승을 향한 구단운영과 마케팅 확대를 꾀했을 때 프로야구단의 크기는 커진다. 자생력을 키우고 모기업에서의 후원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선진국형 구단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할 시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스포츠 단에도 전문 인력을 배치해 운영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이 전문가를 육성해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활용하면서 스포츠단 만큼은 유독 문외한을 기용하여 뒷걸음칠 치는 구조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야구단 사장 임명이 대부분 그런 식이다.

2007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대 유니콘스가 공중분해 됐다. 요즘 같은 분위기

기라면 현대 유니콘스를 매입하려는 기업 또는 투자자들이 나설 수 있었지만 당시는 없었다.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해마다 구단 운영비로 100억 원 이상을 퍼붓는 야구단을 살 기업은 없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4명의 개인 사업자의 힘으로 우리 히어로즈(현 넥센)라는 신생구단이 태어났다.

우리 히어로즈는 현대 구단을 승계<sup>19)</sup>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매입 절차를 밟더라도 전 구단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커미셔너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한국의 야구단은 참으로 묘하다. SK도 전북에 연고를 둔 쌍방울을 사실상 인수를 했으면서도 승계<sup>20)</sup>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프로야구단에서 쌍방울 레이더스, 현대 유니콘스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LA 다저스 프랭크 맥코트 구단주는 2004년 구단을 3억5500만 달러에 매입했다. 6년이 지난 현재 다저스 구단의 가치는 7억2700만 달러로 2배 경증 뛰었다. 현재 메이저리그 구단 가치로 따졌을 때 뉴욕 양키스(16억 달러), 보스턴 레드삭스(8억7천만 달러), 뉴욕 메츠(8억5천800만 달러)에 이어 4위다. 맥코트 구단주는 기업의 CEO라고 생각할 때 회사의 가치를 5년 사아에 두 배나 키운 경영의 귀재라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단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많다. NBA 델러스 매버릭스의 거부 마크 큐반 구단주는 시카고컵스를 매입하려고 애를 썼으나 갖가지 제동이 걸려 끝내 실패했다. 미디어 시카고트리뷴이 소유하고 있던 컵스는 지난해 리케츠 패밀리에게 7억 달러(5위)에 매각됐다. 스포츠단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다.

---

19) 우리 히어로즈는 현대 유니콘스 소속 선수들에 대한 우선 계약 교섭권은 인정받았으나, 현대 유니콘스의 통산 기록은 승계되지 않음.  
20) SK 와이번스는 쌍방울 레이더스의 기존 선수단과 신인 지명권을 인계 받았으나, 쌍방울 레이더스의 통산 기록은 승계되지 않음.

<표 12> MLB 구단가치 및 인수 현황

순 위	Team	구단가치 (\$mil)	인수 가격 (\$mil)	인수 년도
1	New York Yankees	1,600	10	1973
2	Boston Red Sox	870	380	2002
3	New York Mets	858	391	2002
4	Los Angeles Dodgers	727	355	2004
5	Chicago Cubs	726	700	2009
6	Philadelphia Phillies	537	30	1981
7	Los Angeles Angels of Anaheim	521	184	2003
8	St Louis Cardinals	488	150	1995
9	San Francisco Giants	483	100	1993
10	Chicago White Sox	466	20	1981
11	Houston Astros	453	103	1992
12	Texas Rangers	451	250	1998
13	Atlanta Braves	450	400	2007
14	Seattle Mariners	439	100	1992
15	San Diego Padres	408	94/480	1994/2009
16	Minnesota Twins	405	44	1984
17	Cleveland Indians	391	323	2000
18	Washington Nationals	387	450	2006
19	Colorado Rockies	384	95	1992
20	Arizona Diamondbacks	379	238	2004
21	Baltimore Orioles	376	173	1993
22	Detroit Tigers	375	82	1992
23	Milwaukee Brewers	351	223	2005
24	Kansas City Royals	341	96	2000
25	Cincinnati Reds	331	270	2006
26	Toronto Blue Jays	326	137	2000
27	Florida Marlins	317	158	2002
28	Tampa Bay Rays	316	200	2004
29	Oakland Athletics	295	180	2005
30	Pittsburgh Pirates	289	92	1996

출처: 포브스(2010). 『The Business Of Baseball』 . [http://www.forbes.com/2010/04/07/most-valuable-baseball-teams-business-sportsmoney-baseball-valuations-10\\_land.html](http://www.forbes.com/2010/04/07/most-valuable-baseball-teams-business-sportsmoney-baseball-valuations-10_land.html).

국내에서는 야구단을 재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어 매각하지도 않겠지만 매입을 원하는 투자가들도 없다. 이익이 남지 않는 야구단을 살 매입자가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야구단뿐 아니라 한국 스포츠 팀들의 한계다. 미국과 같은 구단의 지배 구조도 아닌 상황에서 선수단의 노조결성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프로야구에서 선수협을 비롯한 선수 조직과 단체 행동의 특징은 선수 권익 주장에 초점이 강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 등도 포함된다. 주도하고 있는 선수들도 각 팀의 간판급 스타들이다. 2군의 무명 선수들이 발기인이나 집행부에 포함 된 적은 아직 없다. 그러나 최저 연봉 급 선수들을 모두 끌고 가겠다는 것이 선수협의 방침인데 이것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스타급 선수들은 일부 축적해놓은 부(富)가 있어 메이저리그의 경우처럼 직장폐쇄와 파업으로 대치했을 때 생활을 유지해 나갈 여력이 있으나 바닥의 선수들은 곧 바로 가족까지 생계 위협을 받게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의 경우 메이저리그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이너리그 선수는 노조원이 아니다. 일정 기간 메이저리그 선수 등록이 돼야만 노조에 가입된다. 따라서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의 노조인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수익 분배 방식 등으로 자금을 축적해놓고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선수들에 대한 보호가 노조 차원에서 가능하다.

반면 아직 한국프로야구의 선수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조직원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프로야구사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선수 조직은 한계이자 취약성이다.

한편으로는 선수협이 대의명분을 선수 권익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새 구장 건설 운동을 통한 한국야구 인프라 구축 등을 내세워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아가야 조직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수협의 치명적인 한계는 8개 구단 전체의 참여를 받지 못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조 설립 찬반 투표에 삼성과 LG 구단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고 퇴장했다. 선수협도 이 사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노조가 있는 팀과 없는 팀으로 나뉘지고 선수들끼리 대립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프로야구 선수 조직이 발전해 가기에는 전체 여건의 성숙과 경제 성장을 통한 매출 구조의 개선, 의식 전환 등의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외에 프로 축구, 농구, 배구 등 타 종목은 선수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한·미·일 각국의 프로야구선수협회만을 비교해 보았다.

<표 13> 한·미·일 프로야구선수협회 비교

한국-KPB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프로야구선수협의회 설립 (현재 임의단체이고 2009년 4월, 노동조합 설립 추진 선언)</li> <li>- 규약 개정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음.</li> <li>- KBO·구단·선수협 대표자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안 제시(비정기적)</li> </ul>
미국-MLB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6년 노동조합 승인</li> <li>- MLB와 MLBPA는 단체협약을 통해 함께 규약 개정 협의(첫 번째 단체협약 -1968년)</li> <li>- MLBPA 5차례 파업(파업연도-1972, 1981, 1985, 1990, 1994) / MLB 3차례 직장폐쇄</li> <li>- 대표업적: 연봉조정신청제도<sup>21)</sup>, 자유계약선수 제도 확립</li> </ul>
일본-JPB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 프로야구선수회 사단법인화</li> <li>- 1985년 노동조합 승인(사단법인 프로야구선수회와 노동조합 프로야구선수회 병존)</li> <li>- 규약 개정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음</li> <li>- 선수관계위원회를 통해 규약 관련 의견 조율(2개월 1회 협상 원칙)</li> <li>- 1차례 파업(2004년)</li> <li>- 대표업적: 단일리그 회기 저지, 신규구단 참가 촉진책 제안</li> </ul>

출처: 각국의 선수협회 공식 홈페이지

## V.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한 법적 접근

현재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입장을 프로야구를 대표하여 설명하자면 KBO가 신인 지명과 이적, 해외진출 등 선수들의 신분 변동과 관련해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구단과 선수 및 야구에 참가하는 모든 자들을 규율하는 야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야구위원회에만 있고 선수는 이를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야구선수는 규약을 준수하고 실행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수동적 지위만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로서의 주체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 등의 개별적 검토를 통한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에 대한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 1. 해외 프로스포츠 선수조직의 법적 위치

#### 가. 미국

미국의 노동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각 제정법의 정책목표 내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정법에 따라 정의된다. 그 중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노동관계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선수가 연방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는 1969년 프로스포츠에 대한 관할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미국의 프로스포츠선수들은 연방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구단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21) 구단과 선수가 계약에 실패했을 경우 제3자인 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연봉을 조정하는 제도.

갖게 되었고, 선수노조는 전국 노동관계법(NLRA -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Fisher와 Ury(1981)는 미국의 프랜차이즈<sup>22)</sup>와 에이전트의 등장이 협상과 계약을 보다 효율적인 과정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 경쟁적이고 소모적이던 협상과 계약과정이 상호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과정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였다.

미국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계약에 존재하는 지명권과 유보조항(프로선수는 계약해제나 트레이드에 의해서만 이적이 가능함을 규정한 조항)은, 선수들이 다른 클럽들과 자유롭게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1960년대 들어 궁극적으로 지명권과 유보조항 시스템에 관한 프로클럽 경영자의 협상지위를 약화 시키는 조치가 등장하게 되면서 동일 리그내의 클럽끼리는 선수들에 대한 서비스 및 계약 경쟁을 벌였다. 따라서 클럽이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향상하게 되면서 선수들은 계약금과 연봉 이외의 분야에서도 향상된 협상의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클럽들은 보다 훌륭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다른 팀에게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계약선수의 자격을 갖는 실력 있는 선수들의 계약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야구선수의 경우 선수들과 클럽간의 강제적인 중재제도를 마련하여 리그에서 3년이 경과하고 나면 야구선수들은 누구나 정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Wong, Glenn M, 1987). 중재제도와 더불어 선수들의 불만 혹은 고충을 해결해주는 노사분규 처리 규칙(조항)도 14페이지에 달한다. 이러한 분규처리(Grievance Procedure)는 연봉협상 및 선수가 메이저리그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도 가동된다.

중재제도와 자유계약선수 제도는 모두 클럽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결과적으

---

22) franchise. 지역권(地域權) 또는 연고권(緣故權).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프로야구와 관련된 사업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즉 야구 팀의 설립 승인과 소유권에 대한 협약, 허가권을 갖는 등 이익을 독점하는 제도. 미국 프로야구가 인구를 기본으로 구단 수를 정한 다음, 그 도시를 본거지로 운영된 것에서 시작.

로 선수들의 계약금이나 연봉 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독점금지에 관한 연방 법률도 큰 몫을 차지했다(임채현, 2004).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프로스포츠가 발달하면서 각종 스포츠 관련 법률들이 필요에 의해 세분화되어 제정되어 왔다. 에이전트관계법을 비롯하여 반 트러스트법<sup>23)</sup>, 방송관계법, 노동법, 세법, 도박에 관한 아마·프로스포츠 보호법, 도핑에 관한 일련의 약물관련법 등이 있다.

미국의 프로선수들은 끊임없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점차적인 선수권익의 향상을 누리는 등 전국노동관계법의 보호 하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 시켜 왔다.

메이저리그 노조(MLBPA)에는 선수뿐 아니라 감독, 코치, 트레이너도 포함된다. 메이저리그 구단에 계약된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있다. 메이저리그 40인의 로스터<sup>24)</sup> 선수는 자동 노조원이다.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포함되면 선수는 최저 4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데뷔 3년 동안에는 구단이 마음대로 연봉을 결정했지만 선수가 풀타임 3년이 지나면 연봉조정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때부터는 성적에 걸맞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연봉조정신청 자격은 데뷔 후 4년차부터 6년차까지다.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일 결렬이 되면 연봉조정신청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선수의 요구액과 구단의 제시액을 서로 교환한다. 만약 이 때도 결렬이 될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절충은 없으며 연봉조정자는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MLB의 경우 선수가 207건, 구단 측이 280건의 승리를 얻었다. 국내 프로야구도 연봉조정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나 유명무실하다. 역대로 선수가 이긴 경우는 딱 한차례에 불과하다. 2002년 당시 LG의 유지현 선수가 유일한 연봉조정신청 성공 사례이다.

23) 反一法, antitrust laws.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행위나 거래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합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의 총칭.

24) 엔트리(경기, 경연 따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명부. '참가자', '참가자 명단'으로 순화)와 같은 뜻.

## 나. 일본

또한 일본의 경우 프로야구의 선수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오래 전에, 일본 프로야구의 커미셔너는 “선수는 사업자이고 급료의 지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등을 조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였다. 일본의 행정실무에서도 프로야구선수는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자로 취급되고 있었고, 야구선수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능인의 출연계약과 같은 것이고 일종의 도급계약적 성격을 가지며, 민법의 고용규정이나 노동기준법 등에 의하여 규제될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선수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일본 프로야구의 구단 측에 의하여 지지되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함께 근로계약설이 강력하게 주장되었고, 1984년 7월 프로야구선수의 친목단체인 선수회가 선수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일본 프로야구선수회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1985년 9월 동경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심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5일 자격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본의 프로선수는 비즈니스로서 스포츠를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해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 보수, 기타 선수의 권리나 의무 등이 스포츠 계약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일본 야구협약 9장에 의하면 트레이드 및 계약갱신은 구단의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FA에 의한 선수가 이적구단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정해져 있으며, 초상권부분은 전부 구단에 귀속된다. J리그 역시 통일계약서에 의해 선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의 내용은 연봉, 선수의 의무, 원정비용 부담, 초상권 귀속, 계약기간, 갱신 등으로 프로야구와 동일하지만 트레이드의 규정은 없다. 또한 한 팀 중 18명이 통일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나누면 되는 것으로 통일계약서에는 없는 특약을 맺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본프로야구선수회 [공인대리인 규약] 제2장 제1조는 선수 대리인을 ‘선수를 대신해 선수 계약 교섭을 담당하는 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 프로야구

협약서에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교섭을 인정하고, 선수는 언제라도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대리인의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법의 불법행위 또는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조직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일본 프로야구의 대리인 제도는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대리인이 계약뿐만 아니라 선수의 스케줄 관리, 초상권 보호, 세금관리, 대언론 상대 등 연예기획사의 매니저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가미한다면 일본의 대리인은 구단과의 계약 교섭만을 담당한다. 그 외는 전문적인 매니저먼트사가 따로 일을 맡는다.

대개의 프로야구선수가 법률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구단(사용자)측에 유리한 야구규약에 따라 선수(노동자)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후루타가 이끄는 선수회는 ‘교섭은 대리인에게, 선수는 훈련에만 전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NPB와 구단 측에 ‘대리인제도 수용’을 요구했다. NPB와 구단은 아니나 다를까 “선수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결국 리그 전체가 파탄날 것”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결국 일본 야당의원들이 NPB와 구단의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여론이 선수회를 지지하자 2000년 드디어 NPB는 대리인제도를 수용하였다. NPB는 대리인제도를 인정하는 대신 대리인은 변호사로만 한정하고 변호사 1명이 선수 1명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교섭 때도 선수가 동석하게 해 구단이 유, 무형의 압박을 계속 하도록 하였다(박동희, 2008).

일본의 자유계약선수제도는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구단보상이 전년도 선수연봉의 150% 또는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의 100%로 규정되어 구단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좀 더 자유롭게 이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트레이드제도의 경우 군복무 문제가 없는 9년간의 자유계약선수 취득조건과 높지 않은 구단 보상금 그리고 구단의 획득가능 선수 수의 조정 등을 통하여 선수계약 양도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프로야구의 보류선수제도는 기간에 있어 2년으로 우리나라 프로

야구와 차이가 없으며, 선수들이 구단을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는 것 또한 크게 다른 바 없다.

## 다. 유럽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ropean Union) 프로축구선수의 법적 지위는 각국이 명시하는 인간으로서의 평등권과 노동(프로축구활동)의 자유권을 자국과 유럽경제공동체법<sup>25)</sup>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995년의 보스만사건 이전 유럽연합 프로축구선수의 법적지위는 선수자신의 나라에서만 법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갖고 있었다. 보스만 사건은 벨기에 국적의 보스만氏가 프로축구선수의 자유로운 이적에 대해, 유럽공동체 조약의 48조(현39조)에 보장받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적을 근거로 유럽재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그 결과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과 유럽축구연맹의 규정이 위법임을 명시해, 프로축구선수도 정당한 노동자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판례가 있다(남중웅, 강성태, 2008).

1995년 12월 보스만 판결(Union Royale Belge des Societes de Football Association and v. Bosman and Others(Case C-415/93)[1995] ECR I-4921) 당시 유럽연합의 유럽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첫째, 선수계약 만료 후, 유럽연합(EU) 가맹국의 선수가 다른 가맹국의 프로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에, 구단이 이적료를 원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 이적에 대한 방해로서 로마조약 4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선수 출장 수에 대해 「국적조항」은 공식전에 적용받는 것으로 프로선수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적조항은 “노동자의 자유 이적에 대한 방해로서 로마조약 48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재판소는 프로축구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조약이 명시하

---

25) 1951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조인하여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약을 성립. 그 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에 관한 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라고 하는 2개의 공동체가 새롭게 발족. 유럽의 이 3개 공동단체가 제각기 집행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65년 이 3개 단체를 통합하는 조약을 설립하면서 공통의 기관이 됨. 1973년 영국이 이 기관에 가맹하면서 오늘날의 유럽공동체법이라 불리어지고 있음.

는 「경제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마조약이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프로야구선수를 비롯한 프로스포츠선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례는 없다.

노동부는 프로스포츠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선수의 입단계약 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 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 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 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간의 근로관계로 상하 간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과는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프로야구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1983. 11. 1. 징수 1458.1-27274). 따라서 프로야구선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1983. 11. 2. 징수 1458.1-27309).

## 2.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에 대한 경제법적 검토

1995년 12월 2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프로야구 임선동 선수에 대한 구단의 지명권 효력정지 소송에서는 “선수가 경기장에 출장하여 경기 내지 플레이를 한다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용역공급계약으로 이는 비록 고용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노무 내지 용역은 선수시장에서 경쟁적격을 갖춘 이른바 인격 있는 상품, 즉 경제적 재화에 해당함은 틀림없으므로, 선수의 공급시장은 독점규제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일정한 거래분야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경제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서덕원, 2008).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독점규제법 제1조).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을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독점규제법 제 19조 제1항). 이것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쟁관계나 거래관계에서 경쟁과 관련이 있는 행위에만 독점규제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

-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

구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프로야구라는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그 사업자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심결을 통해 “프로야구단은 야구 경기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입장료 및 중계권료 등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자들이므로 각 구단은 독점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고 결정하였다.

또한 KBO는 사단법인으로 현재 8개 구단의 공동체적인 조직이고, 프로야구경기의 진행 및 조정의 역할과 프로야구시장 전체의 규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프로야구라는 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계권료를 수수하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어 독점규제법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다(서덕원, 2008).

### 1) 자유계약선수제도

야구규약 제 157조에 의하면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9시즌에 도달한 선수는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자격을 취득한다. 야구선수가 9시즌 동안 부상, 군복무 등으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활동일수가 부족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은 미국의 6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에 해당한다. FA선수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구단은 전 소속 구단에 일정한 금액과 선수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야구규약 제164조)고 함으로써 프로야구선수 공급시장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또는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위배하여 무효인 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 2) 드래프트제도

프로야구의 드래프트제도는 프로스포츠 흥행을 위한 구단 간 전력평준화라는 목적으로 신인선수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단선택을 강요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단의 신인선수에 대한 지명권 보유기간이 너무 길어 지명된 구단과 성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신인선수는 일정기간 선수생활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역시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KBO 및 구단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인 선수와 거래한 행위로 이는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1999.2.5>
  7.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

### 3) 보류선수제도

다음해에 소속선수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 해당 선수를 구단에 보류하는 보류선수제도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피할 수 없다. 보류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KBO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선수가 조정을 거부하면 임의탈퇴선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선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의제기 등 사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역시 독점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6조)

-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1999.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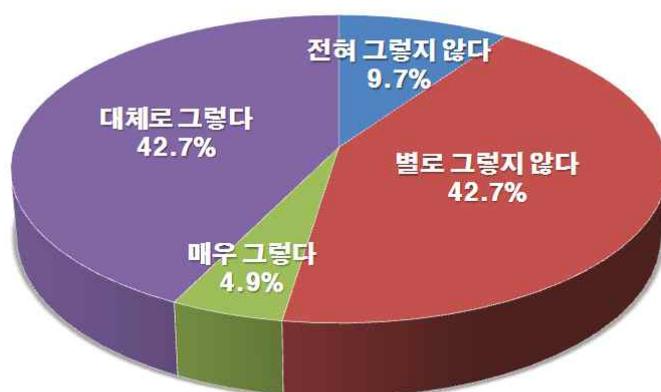
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

### 4) 트레이드제도

마지막으로 야구규약 제10장인 선수계약의 양도를 살펴보면 구단 보유선수와 선수계약을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선수계약 양도 시 선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합의가 아닌 협의는 구단에 실질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선수의 계약상 지위를 구단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서덕원, 2008). 이와 더불어

야구규약 제30조에 해당하는 대면계약의 경우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하며 변호사 1인당 선수 1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내용의 주요변수인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의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계약의 형식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계약 형식의 제한은 계약자유 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독점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4조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선수계약관계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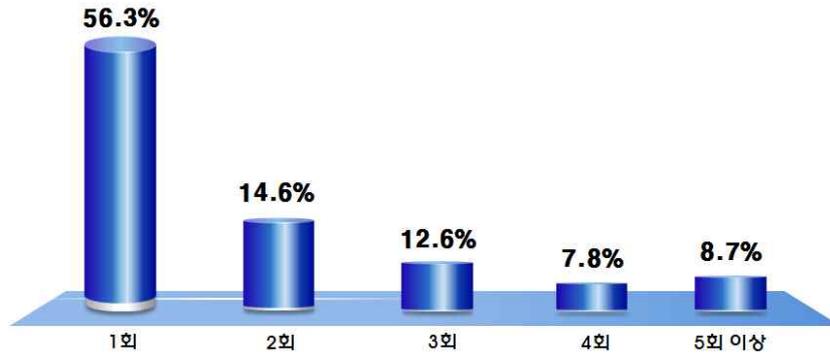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6일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프로야구 선수 103명을 대상으로 구단과의 계약 협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계약협상 시 구단이 성실하게 임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47.6%로 나타났다.



출처: 권시형(2009).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토론회.

<그림 2> 한국 프로야구 계약 협상 시 구단의 성실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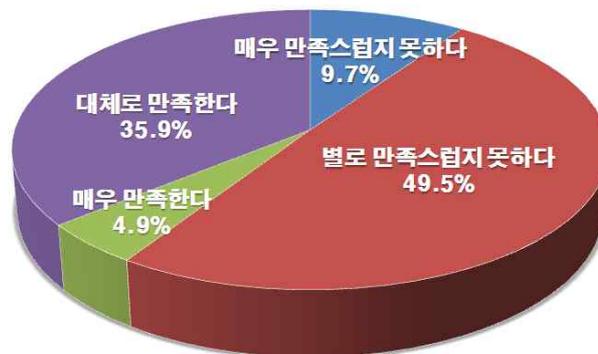
또한 구단과의 계약협상 시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1회’가 56.3%로 절반이상이 답하였고, ‘2회’가 14.6%, 3회가 ‘12.6%’, 4회가 ‘7.8%’, 5회 이상이 ‘8.7%’로 나타났다.



출처: 권시형(2009).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토론회.

<그림 3> 한국 프로야구 계약 협상 시 구단과의 만남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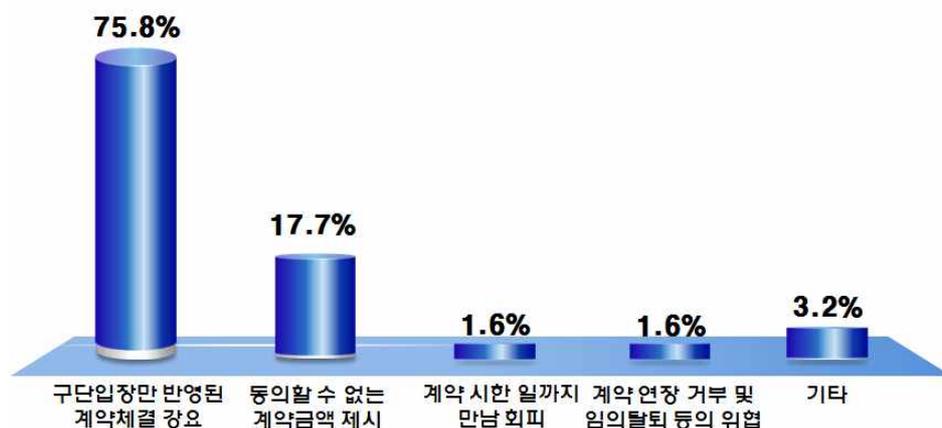
계약협상 시 구단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이 59.2%로 ‘만족한다’는 응답 4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처: 권시형(2009).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토론회.

<그림 4> 한국 프로야구 계약 협상 시 선수들의 만족도

계약협상 시 구단태도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 사항은 무엇 때문인지 질문한 결과, ‘구단 입장만 반영된 계약체결 강요’라는 응답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동의할 수 없는 계약 금액 제시’ 17.7%, ‘계약 시한 일까지 만남 회피’ 1.6%, ‘계약연장 거부 및 임의탈퇴 등의 위협’ 1.6% 등이 있었다. 한편 ‘기타’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출처: 권시형(2009).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토론회.

<그림 5> 한국 프로야구 계약 협상 시 선수의 불만족 원인

####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약관법 제2조 제1항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약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약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장래 체결될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쌍방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임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계약내용이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동종,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대량적 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작성되는 특성을 지닌다.

넷째, 약관이라는 명시적인 명명이 없더라도 다양한 제목이 붙여질 수 있으므로 명칭은 약관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약관이 조문의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다섯째,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채택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약관의 요건은 아니다(이은영, 1994).

프로스포츠 규약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KBO와 K-LEAGUE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적 권리·의무관계 등을 선수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약관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이는 약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수계약서의 조항들도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법은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약관법 제30조 제1항). 노동계약의 분야에서 작성, 사용되는 계약조건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프로스포츠선수계약이 근로계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야구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에 소속되는 선수들과 사이에서는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야구규약에 약관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학설은 프로스포츠선수계약을 근로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스포츠규약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

수계약서 또는 야구규약 조항의 약관법을 적용하여 그 효력의 유무를 다루고 있다.

###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문제

약관해석의 원칙 중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민법은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의 구체적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를 금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야구규약 제27조에서는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개별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의 변경범위를 규약 및 선수계약서로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개별약정의 가능성을 막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4조의 개별약관우선의 원칙에 위배하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 <표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약관조항 I (제6조)

-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

## <표 18> 신의성실의 원칙

---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리에 근거한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

또한 야구규약 제32조에 의하면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선수와 구단의 관계는 사적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선수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이외에 총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민사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에서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완전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등에 해당할 때이다. 한국야구위원회가 독일의 경우처럼 선수들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기관도 아니고 스포츠관련 행정기관도 아니며 더욱이 구단과 동일한 개념의 사용자도 아닌 야구위원회 총재로부터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조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천낙봉, 2009).

## <표 19> 사적 자치의 원칙

---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서 규율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 사법의 원칙.

---

##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불공정약관조항의 문제

약관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의 효과를 부인하기 위한 일반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약관법 제6조의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약관조항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외에도, 동법 제7조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약관조항을 무효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표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약관조항Ⅱ(제7조)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

## 3. 프로스포츠선수의 사업자 및 근로자성 여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온 부분은 프로스포츠선수가 과연 근로자인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프로스포츠선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 데 전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김희동, 2009).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문상의 정의 규정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프로스포츠선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수계약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있는가하면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기에 어디에 중점을 주어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 가. 프로스포츠선수의 사업자성

프로스포츠 선수는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와 같은 입장에서 선수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선수들은 연봉에 대해 이제까지 ‘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신분이 ‘근로자’라고 할 수 없겠다. 따라서 현재 프로스포츠 선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1983년 10월 한 프로야구 선수단이 산업재해보험가입에 앞서 노동부에 노동자 여부를 질의 하였는데, 노동부는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당시 노동부는 선수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인 노동이라 볼 수 없고, 대중 인기에 따라 계약금·보수가 결정돼 임금이 아니며 구단주·감독과의 관계를 노사 간의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의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조를 설립하거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

1985년 4월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스카우트 때문에 파동에 휘말린 축구선수 노인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관련하여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은 단순히 근로계약이 아니라 축구선수로서 경기출전에 대비한 훈련과 경기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 짙게 깔린 비전형 무명계약’으로 판단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손해배상액에 반하여 일반근로자와 같은 약자의 지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프로스포츠선수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선수들이 부담해 온 세금은 이중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그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소세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7가지이다. 결론적으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선수라면 주민세를 포함하여 대략 430만 원 가량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표 21> 연봉별 세 부담 비교

연봉	근로자	사업자	비율(근로자 대비)
1억 원	10,457,862원	6,168,800원	59.0%
1억 5000만 원	24,352,910원	12,248,500원	50.3%
2억 원	41,175,213원	18,865,000원	45.8%
3억 원	74,819,819원	37,345,000원	49.9%

출처: 이건(2010). 『프로야구 선수, 근로자로 신분 바뀌면 세금도 달라진다』, 베이스볼 클래식 통권 제7호.

### 나.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지에 관하여는 이를 고용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기본적으로는 고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성격과 위임계약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무명계약으로 보는 견해, 전속 계약적 성질과 고용 유사적 성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혼합계약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법적 성질 여하에 불구하고 프로스포츠선수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노동법상 근로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근로자로 이해하여야만 노동법의 적용이 가능하고, 프로스포츠선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계약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하여 그 현실적인 필요성을 근거로 삼아 설명하기도 한다.

노동조합법이 근로기준법에서와는 달리 경제적 생활관계를 요건으로 한 것은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으로서 사용종속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관계의 성립과 관련하여 교섭력의 대등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룹에 노동조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연대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 내지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노동관계법을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어떠한 노무에 근로하는 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정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수들의 활동이 노동이 아니라면 근로자성 논의의 필요성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근로자라면 KBO 및 K-LEAGUE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규약과 통일계약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보호와 노조법상의 보호를 통한 선수들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영역에서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보험법상의 보호는 일부 고액연봉을 받는 선수들이나 코치, 감독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없을지 모르나 연봉이 적은 선수들, 특히 2군 선수들에게는 이러한 보호가 매우 절실하다.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국민 건강 보험료를 선수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이는 근로자에 비해 활동기간이 현저하게 짧은 선수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선수들은 구단에 의해 정해진 규약 또는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인 구단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프로스포츠의 본질적 특성이 개인의 특수기능을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선수 개인의 사정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이는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은 노동에 해당되며 경기 참가라는 노무의 제공과 연봉지급이라는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선수의 경기 및 훈련 참가에 대해 지급되는 연봉은 이러한 노동에 대한 대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2007.9.7.)에 따르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이 부분은 근로자성 판단의 부수적 부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부정만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로스포츠선수가 전통적인 근로자라고 하기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개별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연대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사이에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VI. 결론

미국과 한국은 시장의 규모, 모기업의 지배구조, 운영방식 등이 하늘과 땅 차이이다. 선수노조 결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선수들이 현 체제를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을 수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

2001년 선수협의회를 허락할 당시 KBO가 내건 조건은 '600만 관중 동원 시 선수노조 허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선수협의회에서 선수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다. 노조 출범은 프로구단을 소유한 기업들과의 역학관계, 사회 분위기 등 여러 가지 고려 요건이 있다. 당장의 노조 출범 전에 선수 권익 보호와는 거리가 먼 KBO의 규약안부터 정비해야 한다. 선수규약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KBO에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단들이 해마다 적자라며 아우성을 치는데 비록 구단의 손익구조가 투명하게 발표 되지 않더라도 얼마나 적자이며 수입 지출 구조는 어떤 형태로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 그렇게 하려면 회계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당장 제2회 WBC 출전 이후 선수수당과 관련된 게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다. 향후 선수협의회는 조직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KBO와 협상테이블에 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구단 선수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는 것도 우선돼야 할 일이다. KBO와 선수협의회는 현 프로야구의 인기에 편승해 방송중계권료 및 마케팅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환경이 된다면 노조화가 될 수 있다고 선불리 말할 수는 없다. 무조건적인 선수협회의 노조화 보다는 국내 현실에 맞는 대안으로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국내 현실에 맞는 대안 제시

### 가. 선수중재기구 설치

구단과 선수의 대립적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조직의 입장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구속력 강한 조직이 필요하다. 프로스포츠의 정부 내에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구단, 선수, 연맹간의 대립과 충돌을 완화 할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재기구를 설치할 경우 구성원 선정 시 어려움이 따르며, 임시방편으로 쓰일 수 있으나, 구단과 선수, 연맹간의 큰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순진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을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대리인들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대리인이 선수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난 후 그러한 신뢰관계를 악용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학스포츠연맹(NCAA)<sup>26)</sup>은 선수조합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단체의 중재역할은 구단과 선수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선수들의 운동여건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임채현, 2004).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활성화방안을 제도화하였고, 각국에도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대

26)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체육회가 협의하여 2006년 7월 27일 창설하게 되었다.

이 기구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망라한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었던 기구였으나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대한체육회 개정정관에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빈곤한 실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10년부터 예산지원 중단을 결정하였고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결국 해체되었다.

이에 프로스포츠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을 중재해 줄 기관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재위원회와 같이 임시방편의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수가 언제든지 중재기구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접수 절차 및 중재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재기구의 구성원으로는 정부대표 및 선수대표, 구단 사장대표, 프로연맹대표, 프로스포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구단과 선수, 연맹의 대립되는 사안을 공정성, 효율성, 구속력, 실행성이 있게 해결해야 한다.



<그림 6> 선수중재기구 조직 구성

#### 나. 정부 내 전담기구 설치

국내 현실에 맞는 또 하나의 대안 중 하나는 정부 관련 부처 내에 프로선수 계약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 프로야구 규약에는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당한 내용들이 많다. 이는 특히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문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야구규약에 나타난 자유계약

선수제도, 드래프트제도, 보류선수제도, 트레이드제도 등의 계약관련에 있어 선수들의 지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농구연맹(KBL)의 홍보팀은 프로농구선수들은 구단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어, 연봉 계약 시 옵션을 모두 채워야 모든 연봉을 받는 계약을 강요받고 개인 연봉상한선 일방 변경결정이 내려질 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 선수 계약과 관련된 규약(규정)과 선수계약서 등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심사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한다면, 프로스포츠선수의 구단 입단 계약을 비롯한 연봉 등의 각종 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정부 내의 프로스포츠 상사중재<sup>27)</sup>기관은 제일 먼저 선수계약서를 표준약관 양식화 해야 할 것이다.

#### 다. 선수에이전트 기능 활성화

미국 프로야구에서 에이전트(Agent)는 구단을 상대로 선수들의 연봉협상, 광고와 TV출연, 다른 팀으로의 이적 등을 선수를 대신해 처리해 주는 법정 대리인을 말한다. 에이전트의 수입은 연봉계약에서 받는 일정액과 연봉 이외에서 받는 기타수입으로 나뉜다. 연봉에서는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계약금이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프로스포츠가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프로선수들은 그들의 계약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스스로 협상하여야 했으며, 대리인(Agent)을 내세운다는 것은 생소한 문제였다. 그러나 미식축구 선수노조를 시발로

---

27) 분쟁의 당사자들 간에 사전 또는 사후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분쟁의 해결에 대한 판정을 요구하여 판정이 내려지면 분쟁 당사자는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 중재. 상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스스로가 조직하는 중재인단의 판정에 따를 것을 합의하여 분쟁의 판정이 이루어진 것을 상사 중재라 함.

프로농구, 프로야구 선수노조가 에이전트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들 노조는 에이전트들이 조합 회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등록된 후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의 에이전트 자격은 풀타임을 뛰는 메이저리그 선수 한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수노조(MLBPA)에 정식등록을 할 수 있고 각종 규약이나 계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프로팀이라는 구단 소유권이 스포츠에서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변모됨으로 인해, 프로선수들도 그들의 역할에 대해 과거보다 향상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은 프로스포츠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축구를 제외하고는 에이전트제도가 해외만큼 성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프로축구는 야구, 농구, 배구와는 다르게 모든 규정 관련은 FIFA규정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역시 FIFA 및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고 있다. 프로 축구 선수단 관리 규칙 제5조에 따르면 프로축구단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모(母) 양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프로축구 계약에 있어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만으로 제한하며, 이들만이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국내 프로축구가 에이전트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었던 것은 FIFA의 인정이라는 공신력 때문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0년 2월 19일 에이전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봉이나 이적 협상 등 K리그에서 활동하려는 국제축구연맹 공인 에이전트와 변호사는 프로연맹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프로축연맹이 공시한 K리그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 현황(2010. 10. 5. 현재)은 다음과 같다.

<표 22> 대한축구협회 인증 선수 에이전트 등록자 활동 현황

번호	성명	보험 만기일	번호	성명	보험 만기일	번호	성명	보험 만기일
1	김정호	20101130	28	류재현	20110225	54	김동호	20110831
2	이영중	20101130	29	김병관	20110313	55	이정섭	20110310
3	노제호	20110803	30	지상국	20110223	56	장은정	20110722
4	박영욱	20101130	31	장석호	20110704	57	지원구	20110919
5	유지호	20101201	32	김성호	20110315	58	심현광	20110624
6	홍이삭	20101130	33	박남희	20101217	59	최윤석	20110923
7	정효웅	20111112	34	류제니	20110427	60	최진웅	20110217
8	이기완	20101130	35	윤건양	20110307	61	김태휘	20110925
9	김병주	20101101	36	김정수	20110112	62	오재원	20110930
10	이연규	20101218	37	추연구	20110407	63	변용석	20110604
11	방상열	20101130	38	강성근	20110407	64	전용준	20110419
12	한석훈	20101130	39	이정일	20110424	65	조준일	20110420
13	진용주	20110107	40	이순우	20110428	66	우진환	20110503
14	김학렬	20110705	41	정윤석	20110418	67	이동준	20110525
15	김동완	20110124	42	이경호	20101124	68	이건희	20110602
16	윤기영	20110821	43	최낙영	20110522	69	심병하	20110527
17	조용은	20101106	44	김현주	20110519	70	방태욱	20110803
18	윤태조	20110823	45	김용호	20110521	71	최종찬	20110809
19	황소라	20110220	46	강승훈	20101218	72	김한경	20110804
20	김동국	20110503	47	강병찬	20110707	73	임인택	20110902
21	장기현	20110328	48	조병록	20110810	74	최상수	20110901
22	이동엽	20110602	49	이유홍	20110802	75	유재선	20110908
23	송희경	20110119	50	박용준	20110712	76	이상욱	20110910
24	송성근	20101102	51	윤도현	20110810	77	윤진관	20110910
25	이용민	20110720	52	전유제	20110818	78	이진형	20110803
26	오현주	20101130	53	양우진	20110614	79	이형걸	20110913
27	서동훈	20110322	<b>2010년 10월 5일 현재</b>					

출처: 대한축구협회 공식홈페이지. <http://www.kfa.or.kr>.

프로야구에서는 본래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프로축구를 제외하고는 경기가맹단체 및 구단이 스포츠 에이전트의 존재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대리인(에이전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규정을 고쳐 제한된 자격(변호사) 하의 대리인(에이전트)을 인정하기로 했다(야구규약 제30조). 다만 변호사는 2명 이상의 선수를 위하여 선수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프로농구에서는 KBL규정(2010. 10) 제76조(에이전트)에 의거하여 구단의 선수 계약에 관하여는 선수로부터 위임받은 에이전트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직간접적으로 선수계약 협의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에이전트는 총재가 정한 바에 따라 KBL에 등록된 자로 한정되어 있다.

프로배구연맹의 경우 미성년자만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선수들은 대면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래 배구규약 집에는 본내용이 속해있지 않았으나, 2010년 말에 새로 출판될 규약 집에는 이러한 내용이 계약관련 조항으로 포함된다고 한다.

이렇듯 프로배구를 제외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프로농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은 에이전트 대리계약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직도 축구를 제외한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각 규약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에이전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프로야구 규약과 같이 단순히 변호사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에 치중할 뿐 스포츠에 전문적 지식이 없이는 선수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또한 유명 로펌에의 치우침 현상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야구계가 선수노조 설립 문제로 이슈화하고 있는 반면 프로축구를 비롯한 타 종목은 노조 설립운동은 물론 선수협의회 조차 없어 대조적이다. 프로축구연맹의 양태오(2009) 운영부장은 축구계에서 선수 노조 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는 이유는 활성화된 에이전트 제도와 FIFA(국제축구연맹)의 통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적인 에이전트들이 축구 선수들의 매니지먼트에 깊숙이 관여하다 보니 굳이 선수 노조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몸값 협상 등에서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FIFA(국제축구연맹)에 공식 등록된 한국인 에이전트만 79명(2010년 10월 5일 현재)으로 오히려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하면 공급 과잉 상태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프로축구를 관장하는 FIFA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선수들을 보호하고 있고, 갈등발생시 중재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권익과 주장이 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김정란, 2009).

이제 모든 프로선수들에게 기본적인 계약협상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에이전트제도의 활성화는 협상과 계약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에이전트 계약을 통해 구단과 선수는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에이전트 제도는 연봉 재계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에이전트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단순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상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리 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도 일정한 지식이 있으며, 법적인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규약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9년 11월 한국 프로축구 외국인 선수의 구단 입단 계약을 중계한 에이전트가 급여와 계약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긴 혐의로 2명이 검찰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로연맹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정하게 에이전트 선발에 관여하고 계약금 수수료에 관련된 규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정한 계약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구단과 연맹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국가 법령에 의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스포츠에이전트 법제도화 작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Ⅶ. 참고문헌

### 1. 국내 자료

- 한국야구위원회(2010). 공식홈페이지. <http://www.koreabaseball.com/>.
- 한국프로축구연맹(2010). 공식홈페이지. <http://www.kleague.com/>.
- 프로농구연맹(2010). 공식홈페이지. <http://www.kbl.or.kr/>.
- 한국배구연맹(2010). 공식홈페이지. <http://www.kovo.co.kr/>.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2010). 공식홈페이지. <http://www.kpbpa.net/>.
- 대한축구협회(2010). 공식홈페이지. <http://www.kfa.or.kr/>.
- 대한농구협회(2010). 공식홈페이지. <http://www.basketball.or.kr/>.
- 곽대중(2003). **프로야구 선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경제법과 노동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 권시형(2009).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토론회.
- 김정란(2009). **축구 노조, 에이전트 활성화로 필요성 못 느껴**. 스포츠서울(5월 15일). [http://www.sportsseoul.com/news2/baseball/pro/2009/0515/20090515101010100000000\\_6978703810.html](http://www.sportsseoul.com/news2/baseball/pro/2009/0515/20090515101010100000000_6978703810.html)
- 남종영(2009). **프로야구 선수노조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관건’**. 한겨레(4월 29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52400.html>.
- 남중웅, 강성태(2008). **유럽 연합(European Union) 프로축구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3호.
- 김영문(2000).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 스포츠비즈니스리뷰 통권 제26호.
- 김용만, 전호문 박세혁(2000). **스포츠 마케팅**. 학현사.
- 김양희(2009). **미·일, 야구선수 노동자 인정…노조는 소통창구**. 한겨레(12월 3일). <http://www.hani.co.kr/arti/sports/baseball/391369.html>
- 김진원(2004).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의 구단 전속계약에 관한 사례 분석**:

- 팀 스포츠를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 대학원.
- 김태우(2010).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Sports On 통권 79호.
- 김희동(2009). 프로스포츠선수계약에 대한 법적 접근. 프로야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09). 프로스포츠 관중 증가 원인 및 효과 연구. 문화체육 관광부.
- 박동희(2008). 일본프로야구의 대리인제도를 말한다. 박동희 칼럼(9월 1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295&aid=0000000083>.
- 박찬혁(2000). 선수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선수에이전트 활용방안.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덕원(2008). 프로스포츠 선수의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선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심재영(2000). 스포츠권(權)의 법리. 스포츠비즈니스리뷰 통권 제25호.
- 손 윤(2009). 고약연봉 받는 야구선수는 노동자 아닌가?. 프레시안(12월 4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4115706](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4115706).
- 스포츠비즈니스리뷰(2000). 미국 프로야구의 선수노조 역사. 스포츠비즈니스리뷰 통권 제20호.
- 연기영(2010).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스포츠등지(5월 26일). <http://www.sportnest.kr/567>.
- 이 건(2010). 프로야구 선수, 근로자로 신분 바뀌면 세금도 달라진다. 베이스볼 클래식 통권 제7호.
- 이병기, 김주호(2009). 스포츠마케팅. 대경북스.
- 이수영(2009). ‘두 조각 난 프로야구’ 선수노조 추진 내홍. 일요서울(5월 6일). [http://www.ilyoseoul.co.kr/show.php?idx=88159&table=news&table\\_name=news&news\\_sec=009](http://www.ilyoseoul.co.kr/show.php?idx=88159&table=news&table_name=news&news_sec=009).
- 이은영(1994). 약관규제법. 박영사.

- 임채현(2004). 프로스포츠 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천낙봉(2009). 프로야구 제도의 법적 문제점.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토론회.
- 최민규(2009). 베이브 루스는 천국에서 화가 나 있다. 스포츠비즈니스리뷰 통권 제 65호.
- 프로농구연맹(2010). 2009-2010 KCC프로농구 연감. KBL
- 프로농구연맹(2010). KBL 규정. KBL
- 한국배구연맹(2009). '09-'10 NH농협 V-League 미디어가이드북. 한국배구연맹.
- 한국야구위원회(2010). 2010 야구규약. 한국야구위원회.
- 한국야구위원회(2010). 2010 한국프로야구 연감. 한국야구위원회.
- 한국야구위원회(2010). 프로야구 신생구단 창단 모델 연구. 한국야구위원회
- 홍석표, 조희준(2003). [스포츠산업을 말하다 6] 해외의 스포츠산업. 국민체육진흥공단.
- \_\_\_\_\_ (2010). The Champion 2010~2011 유럽축구 가이드북. 맥스미디어.
- \_\_\_\_\_ (2010). 한국 프로축구 연맹 에이전트 등록제 실시. 스포츠서울(2월 19일). <http://news.sportsseoul.com/read/soccer/798152.htm>.
- \_\_\_\_\_ (2009). 60만 달러 챙긴 프로축구 에이전트 2명 적발. 연합뉴스(11월 2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94505>
- \_\_\_\_\_ (2000). 미국 프로야구의 선수노조역사. 스포츠비즈니스리뷰 통권 제 20호.

## 2. 해외 자료

- 국제축구선수협회(2010). 공식홈페이지. <http://www.fifpro.org/>.
- 국제축구연맹(2010). 공식홈페이지. <http://www.fifa.com/>.
- 일본프로야구선수회(2010). 공식홈페이지. <http://jpbpa.net/>.
- J리그선수협회(2010). 공식홈페이지. <http://j-leaguers.net/>.
- 유럽축구연맹(2010). 공식홈페이지. <http://kr.uefa.com/>.
- Forbes(2010). **The Business Of Baseball**. [http://www.forbes.com/2010/04/07/most-valuable-baseball-teams-business-sportsmoney-baseball-valuations-10\\_land.html](http://www.forbes.com/2010/04/07/most-valuable-baseball-teams-business-sportsmoney-baseball-valuations-10_land.html).
- George Foster, Stephen A. Greyser. Bill Walsh(2006). **The Business of Sports**. THOMSON.
- Masterallexis, Lisa Pike(2008). **Principles and Practice Sport Management**. Jones & Bartlett Publishers.
- Roger Levermore, Aaron Beacom(2009). **Spor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 Ulrich Haas(2000). **Die rechtliche Stellung der Sportvereine in einem kommerzialisierten Umfeld**.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 한국스포츠법학회.
- Wikipedia(2010). **FIFPro**. <http://en.wikipedia.org/wiki/FIFPro>.
- Wikipedia(2010). **MLBPA**. [http://en.wikipedia.org/wiki/MLBPA\\_Baseball](http://en.wikipedia.org/wiki/MLBPA_Baseball).
- Wikipedia(2010). **Major League Baseball schedule**. [http://en.wikipedia.org/wiki/Major\\_League\\_Baseball\\_schedule](http://en.wikipedia.org/wiki/Major_League_Baseball_schedule).
- Wikipedia(2010). **UEFA**. <http://en.wikipedia.org/wiki/UEFA>.
- Wong, Glenn M(1987). **Major league Baseball's grievance arbitration system : a comparison with nonsport industry**. Labor Law, Journal.
- 浦川道太郎(2001). 日本{におけるプロ野球と選手契約. 스포츠와 법, 한국스포츠법학회.